

第243回國會  
(定期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3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3年9月16日(火)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 · 답변서】

(질의서)

○趙在煥 委員

(國務調整室)

규제개혁위원회 연구용역 사업 관련

-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초 연구용역 사업은 10건의 연구용역에 총 2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들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그러나 본래 계획대로 진행된 연구용역은 이 중 단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실제로 집행된 과제들을 보면 특별히 사안의 시급을 요하거나 현안으로 대두되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연구과제를 이처럼 바꾸게 됐는지 답변바랍니다.
- 이들을 연구해서 얻은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당초 계획한 연구를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점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 과제의 집행내역을 보면 두 번의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2751만 원이 집행되었지만 워크숍의 내용을 보니 1차와 2차가 별반 차이점이 없는데 혹시 예산집행문제로 필요하지 않은 워크숍을 개최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발주과제의 경우 A4용지 500면의 논문형 서술을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결과물은 A4 183면 짜리라는데, 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이처럼 용역과제 수행이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국외여비 관련

- 당초 계획되어 있던 출장과 실제 집행된 출장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당초 계획 중 OECD/APEC 3차회의에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이 회의에는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석토록 되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핀란드·노르웨이 규제심사 실태조사」, 「해외사무소 운영과약」 등 계획에도 없는 출장을 가야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선진외국 연구기관 운영실태 조사의 경우 당초 미주 지역에서 프랑스, 영국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계획을 수정했겠지만, 본래 출장계획 역시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시킨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 이들 출장을 다녀오지 못해서 생긴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남극에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검열시찰 현황을 보니 00년, 02년에는 고위직으로 구성된 검열단과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단이 각각 다녀왔지만, 01년에는 검열단만 시찰했는데 실무단이 빠졌던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검열단과 실무단은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시찰을 다녀오지만 검열단과 실무단을 따로 보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또한 2002년의 경우처럼 검열단과 실무단이 연속해서 시찰한다면 세종기지의 본래 목적인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 해외공관이나 시설의 경우 상부에서 손님이 오면 이들을 접대하기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실무진들의 시찰은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겠지만, 고위직에서 해마다 시찰한다는 것은 본래 목적과는 다른 관광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이처럼 잦은 검열단 시찰은 예산상의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사례금 예산 관련

- 사례금 예산의 경우 1억697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한 내역은 4,276만원으로 25%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당초 규제개혁 과제연구 사례금으로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실적이 없었고, 특히 규제현장 조사요원 사례금의 경우 00년의 경우 당초 9,1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었지만 한푼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01년, 02년도 마찬가지임. 그동안 한 차례도 지급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대상자들의 참여율이 저조한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텐데 사례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 규제현장 조사사업의 사실상 종료와 사례금 지급의 실적이 전무해 예산액이 대폭 삭감될 가능성이 큼니다. 그러나 본 위원회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일부 사업의 경우 원래 계획대로 국민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 사업을 살려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축소내지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非常企劃委員會)**

자산취득비 전용관련

- 을지연습과학화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런데 비상기획위원회의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자산취득비 전액을 타 비목으로 전용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 장비들을 구입하여 을지·충무훈련에 사용되어 져야 하지 않는

지 답변바랍니다.

- 이 장비들을 구입하지 못하여 생긴 문제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지 답변바랍니다.

**○崔在昇 委員**  
**(國務調整室)**

제주 국제자유도시 기획단 연구 용역사업 예산 과다계상  
- 12억 중 66.5%인 7억9800만 원만 집행  
- 연구 용역비 2억6800만 원 타 용도 임의사용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기획단 운영의 연구 용역비 사업은 선도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6건에 총 12억원을 계상하여 서귀포 관광미항 등 7건에 7억9800만 원을 배정하였으나 첨단과학기술단지, 휴양형 주거단지, 생태·신화·역사공원 조성 등 3건의 발주액 5억4500만 원은 2003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또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국정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 1억9500만 원, 국정관리 통합정보 시스템 전산감리 용역 2400만 원, 국무총리 제도연구 및 국무총리실 기능 운영실태 분석연구 4900만 원을 집행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시 목적과는 달리 각각 다른 분야의 연구 용역에 사용되는 등 적정 예산 산정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

행정 편의주의적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 과징금 부과액의 38.8%만 징수, 체납자에 대한 대책 필요  
- 총리공관 개보수 예산도 잦은 설계변경 및 자의적 운용

국무총리실의 2002년 세입부분을 분석한 결과 총 세입예산이 38억2800만 원 중 IBRD 기술지원 차관의 은행 재전대에 따른 이자 수입으로 당초 재산수입 예산액 5억7800만 원의 49.8%인 2억88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 대비 49.8%에 불과한 징수된 것은 금리인하 등 대외 요인으로 인해 부진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금감위의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으로 87억5000만 원의 징수 결

정을 내려놓고 실제 수납액은 33억9800만 원으로 40.8%의 실적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액 32억5000만 원에 비해서는 초과 달성한 실적이지만 과징금 부과 징수 실적이 부과액의 38.8%에 불과한 것은 우선 부과금만 징수해 놓고 보자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체납자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국무총리 공관 개보수 공사를 위해 당해 연도 예산 9천1백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2000만 원 및 2억4300만 원 전용액 등 총 8억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는 없었던 일부 사업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전용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자의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당초 설계서에는 없었던 삼청당, 경비대 숙소, 경비실, 온실 등에 연결되는 전기배선 및 도시가스 배관, 상수도관 및 관련시설들을 교체하였는데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상하여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 설계시 반영하지 못하고 공사 중 설계 변경을 통하여 공사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 집행하는 것 등은 예산 전용을 가정한 자의적 예산 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田榕源 委員  
(國務調整室)

□ 예산 과다계상문제 시정은 적정 예산산정 노력이 선행되어야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연구용역비 사업은 「선도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6건에 총12억이 계상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연구용역비 금액은 7억9800만 원으로 전체 66.5%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4억200만 원 중 전용된 금액은 3억2800만 원이었는데 이중 2억6800만 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이 없는 「국정관리통합정보시스템구축」, 「국정관리통합정보시스템전산감리용역」, 「국무총리 제도 연구 및 국무총리실 기능·운영실태 분석연구」의 3개 연구용역비로 전용되었고, 6000만 원은 정부합동점검반 확대개편(4600만 원)

과 월정직책급(1400만 원) 소요경비로 전용되었으며, 7400만 원이 불용처리 된 실정입니다.

연구용역 수도 총 10건에 불과하였는데 앞의 전용된 3개 연구 용역을 제외한 7개만이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의 취지와 부합된 연구용역과제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먼저 12억원이나 되는 연구용역비에 대한 구체적 활동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타분야로의 연구용역비 이전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불투명하게 전용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실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이 20세 이상 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성과 설문결과에서 긍정적 평가가 21%에 그친 반면 47.9%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이 도민들 기대를 충분히 반영시켜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제주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의 주된업무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임에도 불구하고 12억원이나 산정된 연구용역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이들 용역과제에 대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이 용역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금이 높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치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靑少年保護委員會)

□ 예산의 방만한 운용 및 자의적 편성 사업으로의 전용 반드시 시정해야

국회는 결산심사 때마다 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한 예산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해왔습니다.

엄연히 예산의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편성한 예산과 과목에 따라 엄격히 예산을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편법적인 예산사용에 대해 엄중한 문책과 시정조치 없이 정부는 여전히 주먹구구식의 예산운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본 위원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국회의 예산승인을 거치지 않고 타 과목으로 지정된 예산을 전용해 무리하게 추진한 청소년보호 단축마라톤 행사를 지적하려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행사에 소요된 경비 1억 1,715만 원의 비용을 다른 불요불급하지 않은 6개 과목의 예산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예년의 경우 3,000여명의 참가자로부터 받은 개인당 1만 원에서 5천 원의 참가비로는 전혀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무리하게 행사를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단축마라톤 행사는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홍보를 위해 기획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 전용된 예산 사용처 역시 큰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업무전산화, 청소년유해환경정화개선대책 등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총 6개 예산과목 예산책정액 1억2000만 원 중 대부분인 1억 17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6개 과목 예산 책정 자체를 무색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용사업의 하나인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사업에 투입될 예산의 경우, 책정된 예산인 2천100만 원 중 82%인 1700만 원이 단축마라톤 사업으로 전용되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사업의 경우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국외여행출장비 등에 총 280만 원이 사용된 것이 집행액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집행될 예산이라면 도대체 왜 책정이 되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도 되는 사업 아닌가요?

예산에 책정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실시한 점과 이의 실행을 위해 관련성이 미미한 6개 타 예산과목에서의 예산액 전용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반드시 시정해야만 될 사항입니다.

이에 더해, 국회의 예산확정권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행위들이 2000년의 경우 신가정교육운동, 2001년의 경우 국군장병아버지 교육사업 등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4년 결산보고에서 다시는 이러한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이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자의적 예산집행을 담당할 책임자와 실무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애초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홍보를 취지로 한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 아니면 위원회나 정부 자체의 홍보효과를 노렸던 것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필요 없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는 무리한 예산집행을 근절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李訓平 委員

##### (國務調整室)

□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의 편성·집행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시 당초 연구과제에 대한 목적을 실행하려는 노력이 전혀 동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당초 계획한 ‘중소기업하위규정정비’등 10개 과제가 실제로는 한 건의 과제도 집행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책평가위원회’의 연구과제 역시 당초 계획과 전혀 다른 과제로 편성되었고, 단지 집행금액만 맞추었을 뿐입니다. 예산이 신중하지 못하게 편성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실제 발주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내용이 미흡한 과제는 매년 몇건이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 발생되는지 밝혀주시고, 또 이들 연구보고서에 대하여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3.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연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사전예측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특수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계획하기 보다는 연구용역에 대해 파트별로 총괄예산을 맡기고 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와 평가를 받게 하는 ‘총괄책임제’를 도입·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 예비비지출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1. 2002년 총리실소관 예비비지출은 18억5089만 원이 배정되어 18억5033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중 전체 예비비지출의 95%에 해당하는 17억 6652만 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전담기구의 설치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능난이도 조절을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검토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동기구의 설치가 당초 예산 편성때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8480만 원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집행한데 이어 올해도 8430만 원을 봉급부족액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를 위하여 2000년도부터 '보수조정예비비'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동일사업에 대한 반복적인 예비비지출은 예비비제도의 본래취지와 상반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3. 예산회계법 21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예비비사용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건비편성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會)**

1. 금융감독위원회 세입수납율이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59.4%로 감소하고 미수납액 역시 16억7400만 원에서 53억52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2. 세입 미수납액 53억5211만 원 중 과징금 및 과태료부과업체의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납부지체액 22억7000만 원에 대한 회수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금융감독위원회는 제재를 함에 있어 엄정해야 할 것이고 해당금융기관은 금감위의 제재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변호사수임료 전체 예산액 1억6100만 원 중 절반이상인 811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소신없이 과도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답변바랍니다.

4. 예산편성시 상대적으로 타 비목으로 전용이 용이한 관서운영비가 과다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

□ 총리공관보수비관련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으로 예정된 총리공관보수가 2002년 사업으로 이월되었지만 2002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억4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 당초 보수공사가 예정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삼청당, 경비대숙소, 경비실과 연결되는 전기

배선, 도시가스 배관 등은 당초 설계시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항인데 실제 착공 후 설계변경하여 반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 보수공사관련 전용액 중 66%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이 총리업무추진비에서 전용되었는데 전용으로 인한 총리의 활동에 지장은 없었는지 답변바랍니다.

4. 총리업무추진비에서 전용된 금액이 3개월간의 총리부채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잔액이라 하더라도, 집행잔액으로 공사규모를 확대한 것은 예산의 편성목적은 무시한 처사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각研究會및所管研究機關)**

□ 기초·공공·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사업비 과다 이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각 연구기관의 결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히 기초·공공·산업 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사업비 이월이 많았습니다.

이월 사유를 보면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공사 발주 지연, 연구지연, 설계 지연, 사업지 미선정 등 예산 편성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부분이 많습니다.

1. 일단 예산을 편성해 놓고 후에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사업비의 이월 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12억4700만 원의 이자 수입이 있는 등 대부분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상당한 액수의 이자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다음 연도에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성과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성과금 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의 이월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체 수입 사용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이자수입을 얻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 이자수입 외에 킬컴기술료 127억을 포함하여 총 250억7200만 원의 기술료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료 수입 중 31억 2868만 원과 킬컴 기술료 수입 중 63억5917만 원 등을 공용자체사업이나 연구장려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자체수입을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2. 1995년 이후 국내업체들이 켈컴에 준 CDMA 로열티가 12억6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책연구소는 국가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민간기업에게 이전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구기관들이 우리 기업들의 로열티 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이나 이자수입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國民苦衷處理委員會)**

□ 국민제안 및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광고료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광고료 예산으로 3억 6528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이 중 2억275만 원만이 광고료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 6253만 원은 다른 사업 분야에 집행되었습니다.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일반 국민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 미약한 시점에서 광고료가 축소 집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작년 말에 있었던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정보화에 있어서 홈페이지 개선과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홈페이지 개선사업 예산이 기관운영기본사업비에 2190만 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광고료 예산 중에서 263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 홈페이지 개선 사업의 편성과 집행이 불일치하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한 결과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디자인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도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3.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찾고 위원회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靑少年保護委員會)**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에서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 사업에 1794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청소년보호 단축마라톤 대회 행사 비용에 1736만 원을 사용하는 등 당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사업에 지출했습니다.

1. 전용 등의 조치 없이 편성된 사업과 무관한 사업경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청소년 긴급전화 홍보 사업비의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상담 및 신고 전화인 1388 청소년 긴급전화의 홍보 비용으로 홍보탑 제작·설치 비용에 441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2200만 원이 제작·설치비로, 550만 원이 보수 공사비로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긴급전화의 홍보수단으로써 홍보탑은 설치와 유지비에 비해서 실효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탑이 주로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홍보탑을 보고 전화를 이용할지 의문스럽습니다.

2.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도서관 또는 각 학교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비용 집행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3. 그리고 홍보탑보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예산 집행을 늘리는 것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李在昌 委員**

**(國務調整室)**

2002년도 국무조정실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930억5877만 원인데,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 6719억3652만 원을 제외하면, 211억2225만 원으로 부처에 비해 많지 않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최고 조정기관이라는 성격을 감안한다면, 예산편성과 집행에 모범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소나마 적절치 못한 예산운용에 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증 (△)감액				
합 계	689,392,295	1,899,956	1,766,520	△19,714,034 19,714,034	693,058,771	691,513,342	977,234	568,195
일반행정	19,222,295	1,899,956		△1,324,034 1,324,034	21,122,251	19,576,822	977,234	568,195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670,170,000		1,766,520	△18,390,000 18,390,000	671,936,520	671,936,520	0	0

무계획적 무분별한 예산집행, 시급히 해결해야

우선, 연구용역사업의 무계획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최고의 기관인 국무조정실이 치밀한 예측과 철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아니라,

편성은 편성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라는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행태의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단면을 규제개혁위원회와 정책평가위원회의 연구용역사업, 즉 연구용역과제가 예산 편성당시에 계획했던 것과 실제 집행과제가 다르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초계획 대비 집행과제 내역

(단위 : 만원)

당초계획과제		실제집행과제	
과 제 명	금액	과 제 명	금액
여객과 화물운송역의 합리적 확정방안	3,000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 (발주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7,57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개선방안	2,000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발주기관 : 한국궤림연구소)	2,400
가스관련 감사제도 개선방안	2,000	학교의 다양성 제고 방안 (발주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2,500
중소기업 하위규정 정비	2,000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 방안 (발주기관 : 한양대학교)	2,864
의료기관설립 및 운영관련 규제	2,000	에너지분야 규제개혁 방안 연구 (발주기관 : 산업연구원)	3,000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의 금전적 제재 로의 합리적 전환방안	2,000	환경분야 규제개혁 방안 연구 (발주기관 : 산업연구원)	3,000
폐기물 규제개선방안 연구	2,500		
농·축산물검사·검역관련 규제개선방안	2,500		
정보통신사업관련 규제개선방안 연구	2,000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2,000		
소 계	22,000	소 계	21,342

정책평가위원회의 당초계획 대비 집행과제 내역

(단위 : 만원)

당초계획과제		실제집행과제	
과 제 명	금액	과 제 명	금액
국정현안과제 평가용역	3,000	국민의 정부 5년 평가 (발주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8,500
정책관리영향 평가용역	3,000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평가 (발주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500
전자정부 구현노력 평가용역	3,000		
소 계	9,000	소 계	9,000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당초에는 교통, 중소기업, 폐기물, 농축산물검사·검역, 정보통신사업 등과 관련한 총 10건의 과제를 계획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이 분야의 규제문제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 등에서 볼 때 화물운송에 대한 과제는 다소나마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과는 성격이 다른 과제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평가위원회는 “국정현안과제 평가 용역” 등 3건이 “국민의 정부 5년 평가” 등 2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된 연구과제들을 보면, 시의성이 요구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구과제가 바뀐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연구계획이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수립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정부 5년 평가”와 같이 정권의 홍보나 연구용역의 편의 위주로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들 연구 과제를 전체적으로 변경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제 집행된 “행정규제의 투명성 제고방안”이나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와 같은 주제는 매우 거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개선방안”이나 “농축산물 검사·검역관련 규제개선방안” 등은 미시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더욱 실용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곧바로 정책으로 수용가능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주제에서 연구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넓힌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현안과제 평가 용역”등이 “국민의 정부 5년 평가”라는 과제로 바뀐 것은 정권교체에 치적을 정리하기 위해 정부예산을 사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대통령 주재의 평가보고회(03. 1. 17)를 위해 급조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일반적인 연구용역비로는 적은 5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평가”라는 과제를 집행했습니다. 예산상으로 17배(8,500만 원)나 차이가 나는 두 연구과제에서 어떤 것이 더 국민에게 유

익한 것이라고 보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국가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도 소비를 줄이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행하는 단일 사업의 적은 예산이라도 국민 개개인이 볼 때는 엄청난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이처럼 무분별한 예산집행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연연구기관 발전 위해 연구회 활성화 방안마련 시급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물췌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5개 연구회는 42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분야별 연구기획과 발전방향 및 연구실적, 경영내용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회는 이사회, 경영협의회, 기획평가위원회를 두고 소관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 외에 연구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와 분석 등을 통해서 연구기관의 발전 방안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5개 연구회는 56명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한 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정비, 소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경제·인문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중복 연구로 인한 연구활동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고, 연구인원이 50명 미만인 4개 연구기관도 독립기관으로서 지원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지원비가 상승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회는 연구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운영의 적절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퇴직금 충당계획 마련 필요

5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중 퇴직금 100%를 충당하지 못한 연구기관은 경제사회연구회 소속 6개 기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4개 기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개 기관,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4개 기관,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4개 기관입니다.

5개 연구회의 퇴직금 적립문제는 2002년도 정



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고, 당시 퇴직금의 적립을 위한 계획 및 예산 반영시 우선 충당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은 예산의 수지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을 퇴직금으로 충당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적립율이 낮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우에는 2002년도 결산에서 퇴직금 적립율이 각각 2.1%와 8.1%를 기록하고 있어, 퇴직금 적립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연구원의 특성상 민간수탁 연구보다는 정부수탁 연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정부수탁 연구의 경우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영개선을 통한 퇴직금 우선 정립의 방법도 요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퇴직금 충당을 달성할 위한 보다 많은 노력과 퇴직금 적립 100%를 달성할 수 없는 연구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연구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融監督委員會)**

과징금 세입예산 과소계상

2002년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세입예산 징수결정 실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32억5000만 원보다 26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001년도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4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조정된 결과이고, 실제로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68억 3354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 납부액 비율이 40.6%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고, 과징금 징수 결정에 대해서 관련업체의 법적의무를 주지하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회는 세입예산 책정에 있어서 과징금 부분을 과소 계상하는 문제와 과징금 징수결정을 하기 전에 과징금과 관련한 법적의무를 관련업체에 환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불용 및 전용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은 71억4620만 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예산을 보면 61억260만 원이고 불용액이 10억 4360만 원입니다.

예산불용은 세출예산에 대한 과대계상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세출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부적절한 전용이 1억 36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관서운영비의 경우 불용과 전용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전용의 경우 관서운영비를 국외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수입료의 과다계상과 인쇄물 제작비용의 미집행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예산의 과대계상으로 인한 불용 및 전용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

총리비서실, 예산전용의 시범이 아닌 예산집행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매년 국회에서 각 부처의 전년도 결산을 심의할 때 단골로 거론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전용의 문제입니다.

국회에서는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치밀하게 따져서 심의·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전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정도 있겠지만 국회의 심의과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전용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자의적인 운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타부처의 모범이 되어야 할 총리비서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공관 수선공사와 관련하여 무려 2억 4300만 원을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서 전용해 사용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공관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아니라 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한 경우와 같습니다.

20~30년 된 건물의 보수계획을 세우면서, 상수도관, 전기와 도시가스 배관의 노후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단지 사전계획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떻

게 보면, 예산 전용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께서는 이렇게 무리한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전용의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5000만 원), 여비(3300만 원), 업무추진비(1억6000만 원)가 공관보수비로 전용을 하고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산을 과다계상한 것이며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점들을 총리 비서실이 모범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비서실장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國民苦衷處理委員會)**

우수한 전문위원 활용으로  
고충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법학·행정학 분야와 위원회 경력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명의 전문위원 중 법학이 6명, 건축공학·행정학·경영학 전공자가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법학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업무가 법률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구성은 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들의 많은 경우가 법·행정적인 적합성 여부보다는 민원발생의 외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우선되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해석이전에 민원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민원사항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민원접수현황을 보면, 건축·도시분야가 27.9%로 가장 많고, 재정·세무 17%, 형사·법무 16.1%가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어서 관련 전문가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은 단지 학위소지자 뿐만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사, 변호사 등에게도 개방하고, 이들에 걸맞는 처우를 보장한다면 고충처리위원회를 찾는 국민들의 시름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자격요건 가운데, “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및 연구·검토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쌓은 경험을 계속 활용한다는 취지는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칫 위원회 출신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보

니다.

전문위원 제도는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다소나마 다른 관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도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출신의 전문위원 진출은 취지에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전문위원 1인에게 4303만 원을 계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무성과 등을 감안하여 2485만 원에서부터 3776만 원까지 하향 지급함으로써 9504만 원의 불용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초예산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靑少年保護委員會)**

청소년보호에 대한 정책적인 인식의 폭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설립된 후 상대적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해 보호와 육성업무가 각각 다른 부처에서 담당함에 따라 이상적인 청소년 정책을 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이중적인 정책집행시스템은 오류를 겪으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 때까지라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주어진 보호업무라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소 불합리한 위원회 운영, 특히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실태조사없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형식적 운영에 그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사업의 재정적 지원, 감시단원의 교육을 위한 지역별 워크숍 및 학교감시단 교사워크숍의 개최, 학교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프로그램(Youth Patrol)보급·확산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주간 기념식 행사, 청소년보호백서 제작비용에 지출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예산은 적은 액수지만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에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사업의 목적을 훼손함으로써 당초 계획했던

소기의 성과를 일부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1,015개의 감시단 운영실태와 보조금을 지급받는 감시단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감시단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태조사를 위해 예산(538만 원)까지 편성하고 있는 현지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 사업,  
예산편성내역과 실제 지출과 달라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유흥업소 등을 특정 지역에 집중시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고용금지 규제 효율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는 난제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 사업추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산집행의 방만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편성내역에는 ‘성인업소 위락지구 지정 운영안 공청회’, ‘성인업소 위락지구 지정 운영 지침 제작·발간’, ‘지역별 공청회 출장’, ‘공청회 개최에 따른 지역별 간담회’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보호 단축 마라톤대회 행사비용’, ‘학교폭력피해학생 치료·재활프로그램개발 관련 국외여행 출장비’, ‘청소년 유해업소 업종대표자 간담회’, ‘시설 및 업소 분과위원회 회의경비’, ‘매체물분과위원회 회의경비’, ‘청소년보호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간담회’ 등에 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계획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이며, 계획된 사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내역과 달리 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년 보호위원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사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유흥업소 등을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구설정과 유흥업소의 허가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구설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고 있고, 유흥업소 등의 허가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시계획법 및 조례 등의 보완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주체로서는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가진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嚴虎聲 委員

(國務調整室)

실효성 있는 연구개발비에 대한 계획과 정책반영 필요

□ 집행하지도 않을 연구과제에 대한 계획은 왜 세웠나?

○ 2002년도 국무총리실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연구개발비 전용, 이월, 불용처리 문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이 집행한 연구개발과제가 2001년 정무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계획대로 집행된 것은 정책평가위원회의 3개 연구과제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2개 연구과제만 계획대로 집행되었을 뿐, 나머지는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과제로 집행되거나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정책평가위원회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여객과 화물운송역의 합리적 확정방안> 등 10개 과제(예산 2억2000만 원)와는 전혀 별개인 <규제개혁발전전략 수립연구> 등 6개 과제(실행 2억1000만 원)를 집행

○ 수질개선기획단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새만금 및 외해수질개선대책 연구>, <새만금호 내외 친환경적 개발연구>의 2개 연구과

제에 3천만원 예산을 책정

- 수질개선기획단의 2개 연구개발비(3천만 원)는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의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전용
- 부패방지대책추진 관련 연구개발 과제였던 <공직부조리방지대책 연구>의 경우에도, 당초 4천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이마저도 25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합동점검반의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전용

□ 질의사항

1. 연구개발과제와 이에 따른 예산을 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차기연도 사업계획,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2. 그런데, 연구개발과제가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도 않았고 설령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승인받은 당초 계획과는 전혀 다른 과제로 선정되어 집행되었다면 국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3. 국회에서 승인한 연구과제와 이에 따른 예산의 배정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를 토대로 차기 연도의 사업계획에 정책과 제도로 반영하라는 것인데,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연구과제와 예산은 내팽개치고 국무조정실 마음대로 전혀 다른 과제를 선정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와 근거는 무엇인가?
4. 그리고,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수행계획서 공모 → 연구수행자 선정 → 과업지시서 통보 → 용역계약서 체결 시기가 2/4분기에 이루어져 연구결과가 나오는 시기도 예산계획이 마무리된 무렵에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오는 등 실제 연구결과가 차기연도 사업계획의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가?
5. 따라서, 연구개발과제와 배정된 예산의 경우, 전년도에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자 말자 최대한 빨리 연구과제 공고 → 연구수행계획서 공모 및 연구수행자 선정 → 과업지시서 통보 → 용역계약체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정기국회의 예산심의 이전에 연구결과를 검토하여 이를 차기연도의 사업계획의 정책과 제도로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金融監督委員會)

과징금 및 과태료 납부기한 도래 미납기관에 대한 대책

□ 2000년도 이후 '03년 8월 현재까지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현황

- 2000년도 이후 '03년 8월말 현재까지 증권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현황

(단위 : 만 원)

구 분		'00년	'01	'02	'03.8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50,000 (7건)	50,000 (6건)	15,000 (2건)	3,000 (1건)
증권거래법 위반**	해외CB발행	555,615 (13건)	-	-	-
	주식공모관련	164,104 (57건)	516,259 (103건)	856,264 (98건)	1,118,655 (91건)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	-	-	32,970 (1건)
합 계		769,719 (77건)	566,259 (109건)	871,264 (100건)	1,154,625 (93건)

\*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한도(자기자본의 100%) 초과(여전법 제50조) 위반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증권거래법 제206조의 11 이하) 위반

\*\*\* 자회사출자한도 및 원화유동성 비율(금융지주회사법 제46조) 위반

□ 각 연도별 과징금 미납 이월액 내역

- '00년도 → '01년도 64,703만 원(14건)
- '01년도 → '02년도 167,432만 원(32건)
- '02년도 → '03년도 535,211만 원(45건)

□ 과징금·과태료 납부기한 도래 후 미납 법인 및 개인 현황(첨부 자료 참조)

- 총 45개 기관, 61억2792만 원('03년 8월 현재까지)

□ 질의사항

1. 이렇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기관들이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2. 가장 많은 부분이 증권거래법중 주식공모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주식공모 관련 신고의무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이유는?
3.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납기를 지키지 않고 있는 기관이 45개 기관, 미납 과징금 및 과태료만도 61억 2700여만 원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납부대책은?

4. 심지어 과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기한이 '00년 9월 21일까지 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납부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데, 이렇게 미납기관이 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國務總理秘書室)

연례적인 업무추진비의 과다계상 반복

- 국무총리비서실 2002년 결산 개요
  - 2002년도 국무총리비서실의 세출예산은
    - 2001년도 대비 4.4%(3억2049만 원) 감액된 69억5904만 원
    - 2002년도 회기중에 3억3144만 원을 전용하였고,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2002만 원과 예비비 3098만 원으로 포함하여 75억1003만 원

□ 질의사항

1. 구성하지도 않은 국정자문단 간담회 예산이 2002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2002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 상에 경상적 기본사업비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국정자문단 간담회 경비를 반영
  - 정책관련단체(국정좌담회, 국정자문단) 간담회 비용으로 20,000원×30인×10회의 예산을 책정
  - 정책관련 단체 간담회 예산중 국정좌담회 3회만 집행
2. 그런데, 국무총리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1999년 9월 8일~2000년 9월 7일까지 구성하여 운영한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00년 9월, 자문위원들의 임기만료 이후 국정자문단을 재구성하지 않아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지요?
3. 왜 구성하지도 않은 국정자문단 간담회 예산을 2002년도 세출예산에 책정하고 집행하고자 했는가?
4. 당정간 정책협의 및 간담회의 경우에도 연간 48회 계획하였으나, 실제 2회만 개최하였고, 부처별 당정협의까지 포함해도 계획에 절반도 못 미쳤는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한 것인가? 전용하여 사용하였는가?
  - 2002년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 당정간 정책협의 및 간담회를 월 4회씩 반영하였으나 실제로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는 2002년 1, 2월에 걸쳐 총 2회 개최한 것이 고작

- 당정간 정책협의 및 간담회 예산으로 20,000×20인×4회×12월=1,920만 원 계획
  - 부처별 당정협의회의까지 합쳐야 겨우 21회 개최한 것에 불과한데, 애초 계획에 비해 절반도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5. 언론인 간담회 개최는 계획보다도 5배나 집행했는데, 계획보다 많이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당초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터인데,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가?
    - 당초 계획은 주요 언론인 초청 간담회 명목으로 월 4회씩 연간 총 48회를 계획하였고, 중앙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는 연간 총 12회 계획하였지만 실제로는 계획보다도 5배나 많은 298회를 개최
    - 2003년도 세입·세출(안) 각목명세서에서도 언론인 간담회 개최를 연간 총 48회 계획하였으나 2003년 7월말 기준, 벌써 135회가 개최

○李性憲 委員

(國務調整室)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 피해 대책은 없나

결산의 중요성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산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태풍 '매미' 피해 집계에 따라 피해규모가 속속 늘어나 1조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르면 이 달 말께 전국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 국고 채무부담행위 활용, 추정예산안 편성 등 다각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풍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발생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가칭) 설치를 서두르기로 하고 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 달 말까지 확정,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자연재해 대비실태 감사결과>라는 제목의 책자로 감사결과 전문(全文)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알고 있는 지 답변바랍니다.

그 서문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2002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는 사전 예방적인 방재 투자를 소홀히하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인식없이 추진된 개발과 건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2백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농경지를 개발하기 위해 폭을 좁힌 하천 부분에는 어김없이 제방이 터지고 농토가 유실됐으며 적당히 건설된 도로와 교량도 예외없이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등 5조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정부가 쏟고 있는 노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라도 부서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서 대규모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에 발맞추어 감사원에서 지난 해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풍수해에 초점을 두고 자연재해 대비 실태 전반에 걸쳐 자료수집, 현장 실지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중략)…

결국 자연재해에 대한 방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기상예보, △산림·하천·제방·댐 등 치산치수 대책, △도로·교량·철교·철개지 등 시설물 안전대책, △하수관리·유수지·배수펌프장 등 배수관리대책, △저지대 주민 등을 위한 신속한 경보 및 대피체계 구축, △긴급구난 및 복구계획, △어린이 등 각 계층별 교육 훈련 및 홍보대책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 모든 관계자가 협의하여 수립한 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제대로 된 외양간을 만들 수 있고 다시는 소를 잃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늦은감은 있지만 잘된 감사보고서라는 판단을 갖게 됐습니다. 이 감사결과를 지난 4월에 받아보고 올해는 아무런 피해없이 지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또 똑같은 태풍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1백17명의 인명피해와 약 1조5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반복해서 입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2001년 재해연보에 따르

면 지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인해 연평균 1백6명의 인명손실(사망과 실종)과 1만4천6백78명의 이재민, 6천8백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1998년 이후 자연재해의 발생횟수나 규모가 커지고 피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2년 태풍 라마손(7.5~7.6), 태풍 루사(8.31~9.1)와 집중호우(8.4~8.11)로 인한 피해는 2백70명의 인명피해와 6조1천1백53억 원의 재산피해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02년 한해의 피해가 그 이전 10년간의 피해규모와 맞먹는 수준으로 대형화, 광범위화돼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사원은 2002년 11월 2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수해방지대책기획단>과 감사원 감사결과와 감사원이 지적한 특별대책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내용을 협의하여 두 기관간 중복되는 사항을 사전 조정하는 등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부의 각 기관에서 수행방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수해방지대책기획단>에서 감사원과 협의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이 조치할 사항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합하고 통합된 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는 재난·재해관리 전담기구를 두어 동 위원회로 하여금 재난·재해관련 업무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획·조정·평가하는 한편 안전교육 및 홍보, 재해, 재난연구 및 대응방안 마련 등 실질적인 재난예방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재난·재해사고 발생시에는 관련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지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상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 법령의 정비를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 통보사항은 사후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한 내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3. 정부가 밝히고 있는 태풍 매미 사후 대책은 결국 감사원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며 사전에 대책으로 수립했어야 할 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에도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똑 같은 대책을 재탕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작년과 같은 똑 같은 자연재해를 입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4. 재난관리법 7조와 시행령 8조에 의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국무조정실이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와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재하는 재해대책위원회는 02년 6월 이후 열린 바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엄청난 풍수해가 발생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있는데 이 같은 회의가 한번도 안열리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해지역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조사가 진행중이더라도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신속히 지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으며 오늘(16일) 국무회의를 열어 태풍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복구 및 보상대책을 논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어제(15일) 국회 재난대책특위에 출석, “태풍 ‘매미’의 전체 피해액이 1조5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전국 일원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으며 “지난해 태풍 ‘루사’때는 특별재해지역 선포까지 20~30일 걸렸으나 이번엔 최대한 빠르게 선포하고 이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재난보험제도 도입, 안전관리실명제, 재난영향평가제 확대, 안전관리현장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가칭)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우선 기성예산과 가용 재해대책 예비비 1조1천800억 원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이것으로 복구 소요비용 충당이 불가능할 경우 지난해 국회에서 의결된 1조원 한도의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활용하거나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언론 및 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 모금 등을 통해 수재의연금 500억 원을 모금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특별재해지역 선포와 관련, 행자부는 당초 시·군·구별로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피해규모가 대폭 늘어난데다 시군구 행정구역별로 선포할 경우 국지적으로 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제외될 수 있는 문제 등을 감안, 전국 일원으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

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 총피해액이 1조5천억 원을 넘으면 모든 피해지역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할 수 있으며, 피해규모가 시군구는 1천억원, 시도는 5천억원을 각각 넘으면 행정구역별로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태풍 ‘루사’ 때도 전국 일원에 특별재해지역을 선포, 2백3개 시군구, 1천9천17개 읍면동이 혜택을 받았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보다 많게는 150%, 적어도 50%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한편, 중앙재해대책본부는 15일 오후 2시 현재 ‘매미’로 인한 피해는 사망 91명, 실종 26명 등 인명 피해 117명, 재산피해 1조3천6백3억 원이라고 집계했으나 추가 피해신고가 속속 접수되고 있어 최종 집계규모는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등 전용문제

결산의 중요성은 예산집행의 결과를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됐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결산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제외한 국무조정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액은 2001년도의 144억 2535만 원보다 33.3%(47억 9695만원)가 증가한 192억 2230만 원이고 여기에 전년도 이월액 18억 9995만 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211억 2225만 원이며 이중 195억 7682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7723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6819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일반행정 분야의 경우, 전용내역을 살펴보면 <표1>, 기본급 2억5130만 원은 봉급조정수당으로, 반부패특별위원회로 편성된 9억 1800만 원은 전액 부패방지위원회 개청준비단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연구 용역비 6천만 원, 부패방지대책 추진사업 연구용역비 2천5백만 원 등은 정부합동점검반이 확대개편(32명→50명)된 부패방지대책추진사업의 여비(6천1백만 원)와 업무추진비(1천만 원) 및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 정부지원점검단의 관서운영비(2천만 원)로, 수질개선기획단 운영사업의 용역비 3천만 원은 전액 같은 사업의 여비(1천5백만 원)와 업무추진비(1천5백만 원)로, 규제개혁위원회 관서운영비 2천

만 원은 같은 사업의 여비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표 1> 국무조정실 일반행정분야 전용내역

(단위 : 천 원)

국무 조정실	인건비 부족	수 당(102)	251,300	기 본 급(101)	△251,300
	사업량 증가	비정규직보수(103)	1,250	비정규직보수(103)	△16,973
		관서운영비(201)	415,830	관서운영비(201)	△451,853
		여 비(202)	97,000	여 비(202)	△79,187
		업무추진비(204)	50,550	업무추진비(204)	△150,500
		용 역 비(206)	40,000	용 역 비(206)	△373,221
		출 연 금(303)	18,390,000	출 연 금(303)	△18,390,000
		자산취득비(407)	468,104	자산취득비(407)	△1,000

□ 질의사항

본 위원은 국무조정실의 연도별 기관 운영비의 기본급과 수당, 관서운영비의 집행내역을 살펴 보았습니다.

1. 반복되는 기본급 전용은 별도정원 관리 부실에 기인

먼저 연도별 기본급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1998년의 경우 기본급 예산액은 33억2400만 원이었는데 이중 2,400만 원이 전용감했고 6,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밝히고 있는 전용사유는 조기퇴직수당채원 활용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예산액이 33억8600만 원인데 1억7600만 원이 전용증하였고 예비비 1억8300만 원이 사용돼 37억4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같은 대규모 증액 사유로는 부패방지기획단 등 설치에 따른 별도정원 증가로 기본급 부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38억9900만 원인데 3억 원이 전용증해서 41억99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 사유는 안전관리기획단 등 설치에 따른 별도정원 증가로 기본급부족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예산액이 46억9200만 원인데 1억9000만 원이 전용증해서 48억7900만 원이 지출됐고 3백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전용증의 사유는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 정부지원점검단 등 설치에 따른 별도정원 증가로 기본급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56억34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이중 2억5100만 원이 전용감했고 52억400만 원이 지출됐고 1억79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전용감이 생긴 까닭은 봉급조정 수당 명예퇴직 수

당 등 수당채원 활용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는 부패방지위원회 신설 등 별도정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 2002년도 결산시 기본급에서 대규모 불용과 전용감이 생긴 것은 1998년부터 기본급 전용사례를 보듯 별도정원이 늘어나면 전용증이 생기고 별도정원이 줄어들면 전용감이 생기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2003년 8월 현재 1백58명원의 정원에 1백71명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초과한 인력 운용도 문제지만 그 보다도 더 문제는 2000년도에는 33명, 2001년에는 36명, 2002년도에는 27명의 별도정원을 국내외 교육훈련, 타국가 기관 파견 등을 사유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타 부서에 비해 많은 숫자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렇게 되니 부족한 인건비를 메우기 위해 매년 예산의 전용이 발생한다고 판단합니다.

전용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상 문제있는 예산집행이라고 볼 때 2002년도 기본급 예산중 7.63%가 전용되거나 불용된 것은 국무조정실 소관 기관의 2002년도 결산 평균 전용률 2.9%의 2.6배 규모임. 이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단순히 대규모 전용과 불용이 생긴 것으로 설명하거나 별도정원이 줄었거나 늘었거나라는 식으로 이유를 돌리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며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보면 2002년도 예산은 과다하게 계상돼 짜졌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 바랍니다.

2. 반복되는 관서운영비 전용과 불용 문제

본 위원은 2002년 결산자료를 보면서 2004년 예산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관서운영비를 과감하게 삭감시켜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관서운영비(201)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8년 예산액 18억9100만 원인데 1억1400만 원이 전용감했고 4600만 원이 불용됐는데 전용사유로는 비정규직 보수·여비, 시설비 부족채원활용을 들고 있고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을 불용의 사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용과 불용된 것을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8.46%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99년도에는 예산액이 16억2500만 원인데 예비



비 2억5600만 원이 집행되면서 전용감이 1억8200만 원 불용이 1백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전용사유로 별도정원 및 파견인력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재원활용을 들고 있고 불용은 집행잔액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는 마당에 전용이 생기고 있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예산집행입니다.

2000년도에는 25억7800만 원이 예산액인데 예비비 10억4700만 원이 집행됐고 3억1400만 원이 전용감했으며 4천1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전용사유는 99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27억5500만 원인데 예비비 15억3000만 원이 집행됐고 1억8500만 원이 전용감했으며 12억6600만 원이 2002년도 이월했으며 5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전용사유로 OECD파견 경비 및 정부업무 심사평가 정보화시스템 장비구입 등 부족재원 활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급증해서 34억8800만 원이 잡혔는데 전년도 이월비 12억6600만 원이 집행됐고 3600만 원이 전용됐고 2억7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전용부분은 규제개혁위원회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부족재원활용에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이처럼 부족한 예산의 전용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예·결산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경우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규개위는 개혁차원에서 예산항목을 넘나드나

규제개혁위원회는 2002년도 예산이 9억7천2백60만8천 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비하여 3.1% 줄어든 것입니다. 이 예산을 사업별, 성질별로 보면 비정규직 보수로 1천6백97만3천 원, 관서운영비로 4억7천95만3천 원(2001년에 비하여 7.9% 증가), 여비로 4천8백10만2천 원, 업무추진비가 2억1천6백58만 원, 용역비로 2억2천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 엉뚱한 연구용역사업에 예산집행하고 관리부적절

규제개혁위원회의 2002년도 예산 중 연구용역비는 2억2000만 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동 예산의 계상은 △여객과 화물운송역의 합리적 확정방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제도 개선방안 △가스관련 감사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하위규정

정비 △의료기관설립 및 운영관련 규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금전적 제재로의 합리적 전환방안 △폐기물 규제개선 방안 연구 △농축산물검사·검역관련 규제개선방안 △정보통신사업관련 규제개선방안 연구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의 개선방안연구 등 10개 연구과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한국행정연구원, 7천5백78만 원) △규제개혁만족도 조사(한국개발연구원 2천4백만 원) △학교의 다양성 제고 방안(서울시립대, 2천5백만 원) △행정규제 투명성 제고 방안(한양대학교, 2천8백64만 원) △에너지분야 규제개혁방안연구(산업연구원, 3천만 원) △환경분야 규제개혁 방안연구(산업연구원, 3천만 원) 등에 2억1천3백4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① 예산배정시 지목되지 않은 주제로 연구용역계약 예산배정때 제시한 연구용역사례가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고 사전에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연구용역과제가 수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예산 배정을 위한 각목명세서 상의 항목으로 잡힌 주제가 현실적으로 더 타당성 있는 주제가 아니라면 그와 관련된 연구주제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예산이 집행된 주제를 보면 더 막연한 주제로 포괄적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집행된 예산 중 <환경분야규제 개혁방안>과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의 개선방안 연구>를 대비해 놓고 볼 때 어느 것이 연구 주제로 적절한 것이냐를 라는 물음을 배제하고 주제로만 객관적으로 볼 때 연구가 가능한 세부적 주제인가를 알 수 있게 해준다고 판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연구용역비가 지출되고 있는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② 연구결과 부실하게 제출돼

특히 이중 7,578만 원의 용역비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시행한 <규제개혁발전 전략 수립 연구>는 신정부의 출범과 급변하는 규제환경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성과를 평가 및 연구·분석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재조정하고 새로운 추진체

계와 전략을 수립하고자 시행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용역에 대해 연구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비 규모에 비하여 연구결과 보고서가 극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A4용지 5백쪽의 논문형 서술을 원칙으로 하여 발주된 과제가 실제로는 1백83쪽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문단형식이나 글자크기에서도 논문형 서술의 연구보고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연구결과보고서가 부실하게 제출됐는데도 사후 정산과정에서 당초 발주금액을 연구결과물에 맞는 수준으로 감액하거나 연구기간을 연장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해야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연구원장으로 하여금 어떻게 이렇게 부실한 연구용역결과를 제출한 것인지 그 경위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③ 목적외 비용지출 문제

동 연구용역비 7천5백87만 원의 집행내역을 보면 책임연구원 등 22인의 인건비로 4천4백75만 원 회의비 등 일반경비로 2천7백51만 원, 일반관리비로 3백61만 원이 각각 집행됐습니다. 동 연구용역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이뤄진 초단기 용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연구원 등 연구원 보조원 등의 2달치 인건비로 4천4백75만 원이 지출된 것이고 2회의 회의개최비로 2천3백59만 원이 지출된 것은 초화판 회의였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연구 용역비를 갖고 워크숍 등 행사경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전용에 해당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적법한 예산 전용절차를 가졌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행사경비라고 한다면 업무추진비 등에 이미 배정이 돼 있는데도 용역비로 지출한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실한 연구보고서를 제출받아 결과적으로 7천5백78만 원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 ④ 왜 수의계약인가

동 용역은 3천만 원이 넘는데도 한국행정연

구원과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1항3호 차목에 따르면 '용역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 과거 연구경험 등에 비취볼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수의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본 위원 판단에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가 제출된 이상 역설적으로 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사례의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 2. 국외여비 초과 지출 및 계획에 없던 국외여행 실행

규제개혁위의 국외여비 예산은 당초 OECD/APEC 멕시코 제3차회의 등 2건의 국제회의 참석 및 남극과학기지 등의 시찰을 목적으로 3천6백96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제차 OECD/APEC 규제개혁 워크숍 참석 등 7건의 해외출장에 5천1백84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그 초과재원은 관서운영비 1천2백40만 원, 국내여비 2백47만 원으로 전용해서 충당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국제회의 참가보다는 당초 계획에 없던 출연연 대학원, 대학 기초조사에 1천9백1만 원 등 해외연구소 운영현황 파악에 예산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이렇게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용이나 이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대로 된 절차없이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2002년도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국외여행을 했던 사업과 관련해 출장자 인적사항과 출장기간, 출장사유, 사후 조사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3. 사례금 예산의 과대계상 및 불법전용의 문제

규제개혁위원회의 관서운영비 예산 중 당초 사례금 예산은 △규제개혁 과제연구 사례금 3천만 원 △규제개혁 안전검토 연구 사례금 5천5백20만 원 △세미나·공청회·연찬회 발표자 사례금 8백만 원 △규제현장조사요원 사례금 7천6백50만 원 등 모두 1억6천9백7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규제개혁위원 안전검토 사례금 2천5백68만 원 △민간전문가 안전검토 등 사례금 1천7백8만 원 등 모두 4천2백76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규제개혁위의 소관 사례금 예산이 불용되고 있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규제를 효과적으로 수집·조사연구하고자 2000년도에 도입한 규제현장조사 사업이 참여율 저조 등으로 사실상 종료됨으로써 당초 규제현장조사요원 사례금으로 계상한 7천6백50만 원이 전액 불용되고 기타 사례금도 당초 예상보다 적게 집계된 데 따른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00년도에 9천1백만 원에 계상됐으나 집행액이 전혀 없으며 2001년도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02년도 예산 배정시 이미 과다 계상문제로 지적된바 있는 사업으로 2000년, 2001년도 결산시에도 저조한 실적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예산 배정이 돼 또다시 전액 불용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예산 배정과 결산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욱이 더욱 놀라운 것은 불용된 사례금 중 8천9백5만 원이 규제개혁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용 절차없이 △국가 이미지제고 관련 자문 사례금 1백40만 원 △국가이미지 포럼 사례금 4백10만 원 △정기국회 관련 자료인쇄 5백14만 원 △세입세출예산안 각 목명세서 인쇄 4백23만 원 △2003년도 예산안관련 국회 예결위 제출자료 등 인쇄 3백20만 원 △수해방지대책사업 과제 발굴 및 제안사례금 4천6백80만 원 △업무용 수첩제작 등 2천4백19만 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산회계법 37조 규정에 맞지 않은 전용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고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든 누구든 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답변 바랍니다.

제37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金融監督委員會)**

금감원 2002년도 결산 문제

금융감독원의 2002회계연도 총수입은 1662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1529억 4300만 원 대비 133억 100만 원이 증가(증가율 8.7%)하였고 총지출은 1642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1473억 5000만 원 대비 168억 7600만 원이 증가(증가율 11.5%)합니다. 이에 따라 당기 수지차익은 20억 1800만 원으로 전기 55억 9300만 원 대비 35억 7500만 원이 감소(감소율 63.9%)하였습니다.

수입증가는 회사채발행 감소에 따른 발행분담금 수입 89억 1900만 원 및 한은출연금(전기이월금 포함) 50억 84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감독분담금이 279억 3800만 원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지출 증가는 운영외비용 3억 9800만 원 및 특별손실 22억 2400만 원이 각각 감소한 반면,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193억 2400만 원 증가한 데 기인합니다.

금융감독위가 2003년 2월28일에 행한 금감원에 대한 결산감사에 따르면 개선 2건, 주의 1건, 건의 1건으로 모두 4건의 조치요구가 이뤄진 바 있습니다.

4건의 조치 중 2건은 해외사무소의 예산관리문제였는데 해외사무소의 경우 예산관리자 및 회계담당이 배정돼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때문에 뉴욕사무소의 경우 2002년도 12월중 신용카드 미결제분 등 18,504달러를 전도금 집행액에 반영하지 않는 등 예산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원(院)설치후 4번의 결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산감사를 받은 것이 전부 임. 차제에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운영수입이 한국은행 출연금과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바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판단에 정부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의 출연금이나 감독분담금, 발행분담금이 사실상 준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광의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볼 때 국회의 결산심이나 국회의 요청에 의한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생보사 상장 개별 권장사항이라는데 사실인가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에 대한 정부의 최종적인 입장 표명이 9월초에서 추석후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금융감독위는 현재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삼성생명과 교보생명 국한)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상장과 관련된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자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권고안이 단순 권고수준인지 강제성을 띠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2. 99년 6월30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방안 발표로 상장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99년 8월4일과 12월20일 보험학회 공청회, 99년 8월20일과 12월13일 금융연구원 공청회 결과도 이미 있고 2000년 5월2일부터 7월5일 까지 외국 컨설팅기관(에너스트 & 영사)의 용역수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동년 8월에는 세계은행의 용역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청회 결과와 2번의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용역보고서를 위해 투입된 예산지출사항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3. 금감원 출범이전인 89년부터 기업공개에 위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고 이에 따르면 90년 3월 생보사 공개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고 동년 8월에는 '생보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이 제정됐으며 동년 9월에는 재무부에 의해 재평가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년 연말에 증시침체 등 상황변화로 공개가 재무부에 의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기업공개 보류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기간이 98년 12월31일까지 무려 11년이나 연장된 바 있습니다. 법인세면제는 2000년 1월10일 13년으로 2년간 추가 연장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인세문제는 어떻게 됐는

지 답변 바랍니다.

4. 이후 99년에 재론이 된후 2000년 12월10일 상장 보류결정이 내려진 이후 2001년에 본 위원이 상장여부 처리계획을 묻는 질문에 금감원은 "향후 증권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보험사의 상장신청이 있는 경우 현행법령에 따라 검토하여 처리하겠음"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생보사들로부터 상장신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5.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현 정부 출범이후 삼성생명 주식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생명보험사의 상장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함으로써 논의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감위에 상장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채권단의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경로에 의해 이 같은 논의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밝혀주기 바랍니다.
6. 최근 금융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 문제는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및 공적자금회수 등의 사안과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간의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같은 주장과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주장과 상충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금감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國務總理秘書室)

총리공관 대수선공사비 전용문제

총리공관 대수선을 위한 2002년도 예산은 9100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5억2000만 원과 전용액 2억4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총 8억5400만 원입니다.

동 대수선공사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삼청당 건축공사 3억4270만 원 △기계설비공사 2억6266만8천 원 △배전반·공조기·발전기관급 1억8200만4천 원 △경내 아스콘 포장공사 2849만 원 △삼청당 전기공사 2600만 원 △비상발전기 케이블매설 498만 원 △삼청당 벽 등 교체 350만2천 원 △경계석 등 석재공사 54만4천 원 △삼청당 전기·음향설비보수 290만6천 원 등 모두 8억5379만4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전용액 2억4300만 원의 전용사유를 살펴보면

사용연료 교체와 전기승압공사 설계당시 예상치 못했던 사업불량의 증가와 방문자용 화장실개축 공사를 경비실 개축공사로 확대 실시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여 관서운영비에서 5천만 원, 여비 3300만 원, 업무추진비 1억60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에서는 집행하지 않은 예산 잔액을 활용한 것이므로 전용재원해당 비목의 당초 사업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즉, 업무 추진비 1억 6000만 원은 약 3개월 동안의 국무총리 부재(인사청문회 및 국무총리 지명자의 교체과정) 기간 중에 집행하지 않은 예산잔액이라고 하고 관서운영비 및 여비 8300만 원의 전용재원은 해외출장이 무산됨에 따른 예산 잔액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설비 전용이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원칙적으로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더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공사의 규모를 확대했다면 이 부분이야말로 예산 편성목적을 벗어난 집행입니다.

본 위원 판단에 2억4300만 원이나 전용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무총리비서실 예산이 방만하게 잡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2004년도 예산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당초 공관대수선은 2001년도 단년도 사업이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은 6억8000만 원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6300만 원을 인건비 부족분으로 전용하고 5억2002만 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고 2001년도에 9460만 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산의 76%인 5억2002만 원이 대규모 이월된 것은 2001년도 단년도 공사를 2001년 7월 이후에 서울지방조달청과 일관대행관리 약정체결이 이뤄짐으로써 실시설계와 실제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2002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월분 외로 9100만 원의 신규예산을 배정하였던 것입니다. 2001년도 기 지출분을 포함하면 공관대수선에 들어간 예산은 9억4860만 원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점은 2001년도 당초계획에 따르면 삼청당 건축공사비가 1억5674만 원이 배정됐는데 2002년도 세 부집행결과를 보면 3억4270만 원이 집행된 것입

니다. 건축공사비가 1억8596만 원이 더 들어간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100%가 더 들어간 것입니다. 2001년 계획에 따르면 삼청당한 채를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더 집행된 것입니다.

삼청당 건축비가 100%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공사설계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배선과 배관등의 노후화로 인해 추가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적당히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2001년도에 해야 하는 사업을 하지 않고 그 당해연도 예산 일부는 인건비 부족분으로 전용해 쓰고 그 부족분을 다음연도인 2002년도에 보존해주었는데도 2억4300만 원이나 전용해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의 2배가 들어간 건축공사를 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2004년도 예산요구자료를 보면 비서실은 사무실 인테리어와 공관담장설치공사 CCTV 설치공사 등에 모두 6억38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방만한 예산요구의 전형이라고 판단합니다.

**(國民苦衷處理委員會)**

**매년 반복되는 전문계약직 인건비 과다편성**

국민고충처리위의 2002년도 당초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001년도 예산현액보다 5.8%(3억9230만 원)가 증가한 71억4157만 원으로서 이중 96.7%인 68억9623만 원이 지출됐고 불용액은 2억4534만 원입니다.

국민고충처리위에는 3개 소위원회를 두고 각 소위에는 분야별로 3인의 위원과 이를 보좌하는 9인의 전문위원(예산상 전문직 나급)을 두고 있습니다.

9인의 전문위원에 대한 2002년도 예산은 당초 3억8727억 원이 계상됐으나 실제 집행은 75.5%에 그친 2억9223만 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9504만 원은 불용처리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2001년 결산에도 나타났는데 전문위원의 7인(2001년에는 7인으로 운용)에 대해 2억6197만 원이 계상됐으나 이중 77.2%에 해당하는 2억226만 원이 집행되고 5972만 원이 기본급 등 인건비 부족분으로 전용됐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까닭은 매년 예산 산정시 동일한 인건비를 책정했는데 실제 채용되는

인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가 차등되기 때문입니다.

2001년에는 1인당 인건비로 3742만 원을 책정했는데 실제로는 1인 평균 739만 원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2002년에는 1인당 4303만 원을 책정했는데 1인당 1056만 원이 차이가 난 것입니다. 차이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는 미사용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2001년과 2002년의 경우를 보건대 국민고충처리위의 전문위원 인건비 1인당 평균액이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2002년에 1인당 4303만 원이 책정됐는데 9명 중 가장 많은 인건비를 받은 분이 3776만 원이었습니다. 527만 원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1년에는 3742만 원이 책정됐는데 3314만 원이 지급된 경우가 가장 적은 경우였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정부의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그 차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례적으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전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일단 따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미 2001년도에 같은 이유에서 같은 근거로 미집행액이 생겨 전용했고 2002년도에도 더 많은 액수가 미집행돼 전용함으로써 2년 연속으로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면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점에서 걱정한 편성을 위해 전년도 실제집행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靑少年保護委員會)

##### 靑少年 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동사업은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정화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의 감시·고발·정화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시민단체감시정화활동지원 및 청소년긴급전화 운영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동사업의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대비 10.0%가 증가한 7억628만 원입니다. 2400만 원의 전용감과 3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동사업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1억4100만 원,

민간경상이전 사업인 시민단체감시정화활동지원 및 유익환경조성사업에 5억1700만 원 등이 집행됐습니다.

####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의 집행실태 및 문제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은 사회저변으로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정화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구성돼 있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고발·정화활동을 지원하고 동시에 교육훈련 및 신고체제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 감시단과 시민단체 감시단으로 구성되며 실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민단체 감시단을 제외한 시민단체감시단 및 초중고등학교 감시단의 활동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말 현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으로 지정된 단체는 289개 단체입니다.

동 사업과 관서운영비 예산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요령집 발간(600만 원), 전국감시단 책임자 회의 참석수당(640만 원)으로 1240만 원이 책정됐으나 2002년 예산심의시 동 감시단 책임자 회의 참석수당은 2001년도에도 회의 참석수당 지급실적이 전무한 만큼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그대로 반영됐고 금번 결산에서 들어난 것처럼 세사업 조정으로 1043만 원이 증가돼 총 관서운영비 예산현액은 2283만 원이 집행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보면 △제1회 청소년보호주간 기념식 행사비용 422만 원 △청소년보호백서 제작비 1770만 원 △유수 패트롤(Youth Patrol) 프로그램 교안제작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35만원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청소년보호주간 기념식행사와 청소년보호백서 제작비용을 동 사업의 관서운영비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목적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36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동사업의 국내여비 예산은 실태조사를 위해 538만 원이 계상됐으나 2002년도에는 전무할 실정입니다. 2001년에는 동년 11월에 19개 시민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바 있으나 이것도 요식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2002년도에는 운영실태조사 실적은 전무하며 유스패트롤 운영관련 출장여비, 청소년 보호업무 직무교육 참가여비 등

으로 지출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태와 보조금을 지급받는 감시단의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실제로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예산이나 결산이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2.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집행실태 및 문제점

52개 단체에 대해 3억1947만 원이 집행된 2001년에 비하여 5억2000만 원이 계상돼 2002년의 동사업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54개 단체에 5억1679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을 보면 54개 시민단체에 300만 원부터 1800만 원까지 주로 민간단체의 행사비 지원 예를 들어 연극제·토론회 등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취지는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예산을 통해 감시단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행사성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가 누차에 걸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이동풍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예·결산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국감에서 지적되는 문제인데 동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얻기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을 배제하고 사업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2002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 시민단체는 청소년보호위원회산하 정책자문위원회 중 지역사회분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응모한 시민단체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3. 청소년긴급전화 운영지원사업 문제

청소년 긴급전화 운영지원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신고는 물론 학교·청소년 폭력신고 및 고민상담 등 청소년 문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전화(1388)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긴급전화는 16개 시·도 및 232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직영하는 기관은 88개 기관의 100회선이며 청소년상담실 등에 위탁 운영하는 기관은 74개 기관으로 총 1백62개 기관에서 1백74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동 사업예산은 청소년긴급전화 홍보탑 제작, 설치비용 4410만 원, 업무추진비 120만 원으로 총 4530만 원이 편성됐으나 이중 1093만 원이 관서운영비로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홍보탑 제작·설치에 2200만 원, 홍보탑 보수공사비로 550만 원, 청소년긴급전화 홍보포스터 제작비 208만 원 등으로 집행됐습니다.

홍보탑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5개의 홍보탑이 설치됐는데 매년 신규제작과 보수에 지금까지 1억730만 원이 집행됐는데 문제는 1개의 홍보탑 설치비가 2000만 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장소를 보면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 중부고속도로 만남의 광장, 천호동 현대백화점, 부산역광장, 광주 광천종합터미널 등 5곳입니다.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와 터미널광장입니다.

본 위원은 왜 고속도로 휴게소에 청소년긴급전화 홍보탑이 세워져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긴급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광고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靑少年保護委員會)

다음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과 음란폭력매체물추방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는 학교와 선생님에 대한 권위가 실추되고, 네쌍 중 한쌍의 가정이 이혼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정의 붕괴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적 버팀목 역할을 해온 학교와 가정이 흔들리고 있으나, 반면에 우리 청소년들은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전화방, 화상미팅방, 비디오방 등 수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즐겨보는 방송 오락프로들은 인간의 인성과 정신의 아름다움보다는 말초신경

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과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퇴폐·향락적인 사이버문화를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청소년의 정상적인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망라하여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건전한 이성과 가치관을 가진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유해환경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적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활동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의 집행실태를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1,015개에 달하는 감시단의 운영과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감시단들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위원회에서는 현지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예산 전액을 유스패트를 시범학교 운영 관련 출장여비, 청소년보호업무 직무교육 참가여비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위원장!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은 직접보지 않고 서면만으로도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2. 감시단의 활동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체계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3.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위원회가 현지 실태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예산 전액을 타용도로 사용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행위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예산의 대부분은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지난해 54개 시민단체에 5억1679만 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지급사업 중 전주 YWCA의 청소년 연극제나 서울 YMCA의 청소년대토론회 등 몇몇 사업은 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 강화라는 사업 취지에 직접적으로 부

합하지 않는 사업이었는가 하면,

공모에 응모한 시민단체 간부가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를 함으로써 심사위원이 속한 시민단체의 사업이 선정되는 등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연극제와 같은 행사성 사업이나 토론회 등 사업취지와 직접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4. 공모에 응모한 시민단체의 간부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나눠먹기식 사업자선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國務調整室長 李永鐸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규제개혁위원회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첫째> 규제개혁위원회의 2002년도 연구용역사업이 당초 예산과 다르게 집행된 이유와 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 당초 '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 집행과정에서 신정부 출범에 대비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중점을 두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과거 양위주에서 질 위주의 2단계 규제개혁으로 전환,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보다 신중한 수요예측을 통해 연구용역비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와 관련하여 2회에 걸쳐 개최된 워크숍이 큰 차이점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집행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규제개혁 발전전략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2회



의 워크샷을 개최하였으며, 하나는 「규제개혁 추진체제 발전방안」, 다른 하나는 「규제개혁센터 발전방안」이 주제였습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규제개혁 추진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이 규제개혁센터에 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다소 중복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연구기관이 좀 더 명확하게 연구용역비를 집행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당초 계획에 비해 연구용역보고서의 분량이 줄어 드는 등 용역과제 수행이 부실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은 신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그간 규제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추진체계·추진전략·추진과제 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입니다.

○ 지적하신대로 연구기간의 부족으로 연구결과보고서의 형식과 분량 등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 앞으로 연구용역의 품질관리와,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비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국외여비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 내용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조정관실 소관 국외여비는 당초 OECD 규제개혁 심사회의, OECD/APEC 규제개혁회의, 선진 연구기관 운영실태조사 등 4건이 반영되어 동 관련 출장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 다만, 출연(연) 연합대학원대학 설립관련 기초조사 등 예상치 못한 소요가 추가로 발생하여 별도로 출장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OECD/APEC 멕시코 규제개혁회의’의 목적은 동 회원국간에 규제개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규제개혁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별로 순회하며 개최하는 회의로서 '02년 10월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제3차 회의의 개최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조정관 등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핀란드·노르웨이 규제심사’는 OECD 규제개혁 국별 심사회의 참석여비로 '02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계획입니다.

- OECD에서는 회원국 중 매년 2~3개 국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0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위 국가들에 대한 규제심사가 개최되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 ‘주요국의 연구기관 운영현황 파악(해외사무소 운영과약이 아님)은 새정부 출범에 앞서 연구회체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주도의 R&D체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시스템을 고찰할 필요성에 따라 출장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 ‘선진외국 연구기관 운영실태 조사’가 미주에서 유럽지역으로 변동된 것은 지난해에 출연(연) 합동 연찬회를 개최하면서 미국 Argone 연구소의 조양래 박사 등 미주지역 한인학자들을 초빙하여 미국 연구기관들의 동향을 청취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해외출장과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들이 해외 실태조사를 통하여 습득한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국외출장 계획수립시 사전계획을 치밀히 수립하여 계획변동을 최소화하고 해외출장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극 검열단 관련,  
 ① 한해도 거르지 않고 남극에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② '01년에는 검열단만 시찰했는데 실무단이 빠졌던 이유는 무엇인지,  
 ③ 검열단과 실무단을 따로 보내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④ 2002년의 경우처럼 검열단과 실무단이 연속해서 시찰한다면 세종기지의 본래 목적인 연구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⑤ 잦은 검열단 시찰은 예산상의 낭비라고 지적하시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나라는 '89년 10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 지명된 이후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89년부터 매년 남극검열단을 파견하여 타국의 남극기지에 대해 검열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남극조약 제7조(조사단 운영)  
 · 남극에 진출한 국가가 남극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원을 파견하여 타국기지를 방문,

감시활동을 수행토록 규정

※ 남극조약

- '59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61년 6월 발효
- 남극대륙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정하고 남극의 이용원칙을 확립한 조약
- ①남극의 평화적 이용 ②과학적 탐사의 자유 ③영유권의 동결, ④핵실험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88년 2월 해양(연) 세종기지 건설이후 '89년 10월 협의당사국으로 지명
- 검열단 운영은 남극조약상 의무로서, 동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세종과학기지과 남극에서의 우리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합니다.
  - 남극 검열단은 본래 목적인 검열활동 외에 사실상 오랜 격리생활을 하고 있는 세종기지 연구원들에 대한 격려 목적도 있으며,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고국 관계자의 방문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지리적 특성상 연구원들도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0년 12월과 '02년 1월 2회에 걸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들로 남극실무단을 구성, 시험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실무단은 '02년 1월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결산심사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사례금중 규제현장 조사요원 사례금이 그 동안 집행되지 못한 사유 및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하시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개혁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러한 취지에서 당초 규제현장조사요원 사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 다만, '01년도에 출연기관 연구원을 활용하여 공사, 공단 등 준공공기관에 의한 유사행정 규제를 발굴·정비하는데 사용하였으나 2002년도 정무위의 결산심사시 출연기관 연구원을 활용한 것은 규제조사요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예산의 명확성을 위해 개선이 필

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02년도에도 '01년도와 유사한 방법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정무위 지적을 감안하여 미집행

- 이에 따라 '03년도 예산부터는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을 위해 동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규제개혁과제 발굴사례금에 통합하였습니다.
  - 현재 동 예산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 공장 설립 및 입지, 수출입통관 등 10대 규제개혁 전략과제의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및 안건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하여 분기별 경제5단체 건의과제 수립, 민관합동 기업규제실태조사, 지방순회 규제개혁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획단 연구 용역사업 예산 12억원중 66.5%인 7억9천8백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용역예산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2억원(선도프로젝트 기본계획 수립 10억원, 제주 홍보 인터넷 사이트 구축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계상된 예산 중 서귀포관광미항 연구용역 등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7억9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제주 홍보 인터넷 사이트 구축사업은 '02년 5월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자체사업으로 홍보사이트를 구축하였으므로 계상된 사업비를 절감하였습니다.
- 또한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3건의 연구용역사업은 부지 선정 및 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田瑢源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국제자유도시기획단 연구용역예산 12억원을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과다계상한 사유와 연구용역비의 효율적인 이용 및 성과, 이월금이 높게 생긴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12억원(선도프로젝트기본계획 수립 10억원, 제주 홍보 인터넷 사이트 구축 2억원)을 계상하여 서귀포관광미항 연구 용역 등 7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집행하였으나, 제주 홍보 인터넷사이트 구축사업은 '02년 5월 설립된 자체사업으로 홍보 사이트를 구축하였으므로 계상된 사업비를 절감 하였습니다.
- '03년 9월 현재 7대 선도프로젝트용역사업을 수행 완료('02.3~'03.8)하여 중문관광단지 용역사업은 한국관광 공사에, 제주공항자유무역지역 용역사업은 제주도에, 쇼핑아울렛 용역 등 5개 사업은 제주개발센터에 이관 되어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수행중이며, 본 용역을 토대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투자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자유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그리고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3건의 연구용역사업비는 5억4천5백원으로 부지 선정 및 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서 이월액이 높게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 편성·집행 등의 문제 지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 <첫째> 연구용역비가 당초 계획된 과제와 다른 과제로 집행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이 신중하게 편성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지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용역예산은 사업 시행 1년 전에 편성되고 국정상황에 따라 시급한 용역 수요가 수시로 발생되어 당초 예산 내역대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실제 발주된 연구보고서에 대한 평가방법과 평가 결과 미흡한 과제 건수 및

비율, 미흡한 과제에 대한 조치방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최종 연구보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2회정도 용역내용 등을 사전평가 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미흡한 용역보고서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향후에는 좀더 충실한 연구보고서가 작성되도록 보다 철저한 용역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예산편성과 집행의 연계성 차원에서 연구용역에 대해 파트별로 총괄예산을 맡기고 집행에 대하여 결산심사와 평가를 받게하는 '총괄책임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총괄책임제'는 집행부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에 동제도의 도입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전담기구 설치 예비비 지출 관련, 충분히 검토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동 기구의 설치가 당초 예산 편성때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2001학년도 및 2002학년도 수능에서 2년 연속 난이도조절 실패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긴급하게 『수능 상시 연구·관리 체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2003학년도 수능에서는 위와 같은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능상시관리 체제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동 사항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1년도 12월에 이미 2002년도 본예산이 편성이 종료되어 부득이하게 2002년도에 예비비를 편성하여 운용하게 된 것입니다.
- \* 2003년도 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

공무원 보수현실화를 위한 반복적인 예비비 지출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비비사용의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인건비편성방식의 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봉급조정수당(보수조정예비비)제도는 민간기업과의 인건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무원처우개선5

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개선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在昌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2002년 예산에 편성된 정책평가위원회의 “국정현안과제 평가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과제가 “국민의 정부 5년 평가” 등 2건으로 변경되어 집행된 것과 관련하여

- (1)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연구계획 수립과 편의 위주의 연구용역 집행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시고, 연구과제를 변경하게 된 이유와
- (2) 『국민의정부 5년 평가』는 정권교체기의 치적 정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적하시고, 『5년 평가』(8,500만원)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평가』(500만원) 과제 중 어떤 것이 국민에게 유익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1)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당초 '02년 예산 편성시 정부업무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정현안과제 평가용역』 등 3건의 연구용역에 9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국민의 정부』 마지막 해에 그간의 5년간 정부정책의 추진상황, 추진성과 등에 대해 외부기관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평가를 해보는 것이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긴급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 참고로 국회의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5년 평가』 사업은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2) 『5년 평가』는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평가위원회가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정책성과와 반성 및 향후 과제를 균형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치적정리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 『5년 평가』는 국민의 정부 5년간의 정책성과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으며,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정책의 평가』 과제와 유익성을 단순비교하여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규제개혁위원회 2002년도 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연구과제를 변경한 이유, 특히 구체적인 주제에서 포괄적인 주제로 변경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당초 '02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10개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 집행과정에서 그간 규제수의 50% 이상 철폐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체감도가 낮으므로 보다 새로운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신정부 출범에 대비 그간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연구용역에 중점을 두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 앞으로 보다 신중한 수요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회의 인원이 적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소규모 기관이 독립기관으로 운영되어 연구지원비가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운영의 적절성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연구회 체제 출범후 연구기관의 자율성이 신장되고 경쟁 및 평가체제가 도입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일부에서는 연구회의 전문성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연구회에 부여된 소관기관 평가, 기능조정 및 정비 등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관리체제와 관련하여 연구회체제를 보강·개선하는 방안, 과기계출연(연)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구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관

리체제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여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 과제명 : 출연(연) 전략적 발전방안, 연구기간 : '03.6~11

-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 및 지원체제 보완 발전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적립율이 낮은 연구기관이 많은데 이들 기관들이 대부분 과제수탁 여건이나 경영개선을 통한 수입여건도 좋지 않아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퇴직금충당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과정에서 수탁사업 수입 등 잉여금 발생시 퇴직금으로 우선 충당토록 하고 불필요한 자산처분 등을 통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어느정도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체수입확보가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嚴虎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집행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연구개발과제와 이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연구개발비는 전문가의 연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영역이나, 각종 여론 조사 등 우리실 조직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개발과제가 당초 국회에서 승인 받은 것과 다른 과제를 선정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이처럼 다르게 집행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용역사업의 경우 사전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는 있으나,

- 용역 사업시행 1년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점
- 국정 상황에 따라 시급한 용역수요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내역대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회의 예산승인 범위 내에서 해당사업의 연구개발분야 일부를 변경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연구개발사업의 발주 및 체결 시기가 너무 늦어져 연구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의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업추진 관련 제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배정, 사업자 선정 지연 등으로 인해 연구개발사업의 발주 및 체결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대체로 상반기에 60%(25건중 15건) 발주되는 등 연간 고르게 발주되고 있습니다.

계	상반기	7월	8월	9월	10월	11월
25건	15건	2건	2건	1건	3건	2건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내에 연구개발사업을 발주토록 하여 연구보고서가 차년도 사업계획의 정책 및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원 통보내용에 대한 대응사항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감사원의 '자연재해대비 실태감사 결과'(03.4.4)는 감사원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각 시·도에 처분요구 형식으로 통보하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서 조치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감사원은 감사지적보고서 작성시 국무조정실에서 기확정('03.4.8)한 「수해방지대책」의 수립과정('02.11~'03.3)에서 수행된 수해현장 실무자 설문조사('02.12), 수해방지자문위원 워크숍('03.1.17) 및 수해방지대책

공청회('03.3.7) 결과 등의 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 한편, 감사 지적사항은 투자재원확보나 법령 개정 등 상당한 기간을 요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어려운 내용도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급 예산중 7.6%가 전용되거나 불용된 것으로 보아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의 내각통할을 보좌하며 국정을 종합하고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 월드컵·아시아 경기대회 지원 등 범 정부적인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한시적 기구인 기획단의 설치와 폐지가 자주 이루어짐에 따라 인건비의 전용이나 불용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인건비 소요를 좀더 정확하게 판단하여 인건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재해방지대책 보고서를 정무위에 제출 요망

- 정부는 「국가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난 8월 30일 국회에 제출(책자 400부) 하였습니다.  
\* 책자 400부 : 국회에서 각 국회의원님 배포용으로 400부 요구
- 국회사무처(의안과)에서는 동 책자를 각 위원회에 배포하였으며, 정무위원회에는 9월 17일 배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柱宣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대통령령인 직제로 차관급 수석조정관 신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각 기관의 기관장과 부기관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무조정실의 경우에도 부기관장인 차장을 설치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제2조③항1호)은 정무직 공무원을 “...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어 부기관장이 아닌 정무직공무원은 대통령령인 직제에 근거를 두어 신설할 수 있습니다.

※ 총 112개 정무직 직위중 29개 직위가 대통령령에 근거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보좌관, 대통령경호실 차장, 중앙공무원교육원장,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의 사무차장 등

- 국무조정실의 수석조정관은 기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부기관장(차장)이 아니라 소관 특정업무에 대하여만 실장을 보좌하는 참모기구(staff)이므로 대통령령인 직제에 근거를 두고 신설이 가능

작년 루사 태풍피해시 국무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에 경제부총리가 참석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작년 루사 태풍 발생시('02.8.30~9.1)에는 국무총리주재의 사전대비를 위한 회의는 없었으며, 피해발생직후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장관)의 17개 부처 재해대책위원 간담회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文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수해방지 대책 등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첫째> 수해방지 총괄기능 강화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수해관련 업무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가 유기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부내 총괄기능이 중요합니다.

- 현재 이와같은 기능은 행정자치부 중앙재해대책본부 중심으로 지방재해대책본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소방방재청 설립 등 재난관리체계 일원화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와는 별개로 국무조정실을 작년 「루사」태풍 피해를 계기로 한시적 기구인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고 총 76개 과제에 42조 8천억원을 투입하는 범정부적인 「수해방지대책」을 확정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무조정실은 중·장기 수해방지대책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조정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성금 및 지원예산의 조기 집행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수해 복구를 위해서는 신속한 예산집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현재 개산예비비제도(예산회계법 제39조), 지방예산 성립전 사용조치(지방재정법 제36조), 수의계약 및 분할발주(지방재정법제63조 등)의 제도 활용과 함께 재해구호기금 선사용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향후 수해원인 및 복구대책 종합 검토시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피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구예산 조기집행 방안 등에 대하여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수립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정부에서는 상습피해지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 예산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예산투자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1,800	2,050	2,800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705	1,000	1,416

- 지가상승 및 도시화 촉진 등으로 지하철, 지하상가, 도로 등 개발된 지하공간에서 발생하는 침수피해대책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계획중인 “지하공간의 침수방지대책 개발” 연구·용역을 토대로 건축법 개정, 설계기준 강화 등의 법령제도정비를 담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1.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중 「규제개혁발전전략수립 연구」는 발주금액에 비하여 보고서가 부실하고, 회의경비를 연구목적과는 무관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연구용역」은 신정부의 출범에 대비하여 그간 규제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추진체계·추진전략·추진과제 등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발주한 용역입니다.

\* '02.10.30~12.29, 한국행정연구원, 7,578만 원 - 동 용역 내용은 금년 4월 29일 확정발표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 및 「2003년도 규제개혁추진지침」마련에 주요자료로 활용하는 등 업무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 다만, 지적하신대로 연구결과보고서의 형식과 분량 등 형식적인 품질관리, 회의비 지출 등에 있어서 다소 철저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연구용역의 품질관리와, 연구기관에 의한 연구비의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보다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2. 정책평가위원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중 「국민의 정부 5년 평가 연구」는 정책평가위원회 본연의 업무를 외부 용역으로 추진하여 연구보고서의 활용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국무총리소속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매년 2회(상·하반기) 정부의 주요정책과제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 『5년 평가』는 국민의 정부 5년이 지난 시점에서 5년 전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고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 정책평가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5년 평가』를 위해 『5년 평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 평가기본법에 의한 평가전문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 『5년 평가 특위』 내 분야별 소위원회 및 정책평가위원회 전체회의등에서 7차례에 걸쳐 평가내용을 검토·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를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정책평가위원회의 『5년 평가 보고서』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 향후 정책평가위원회는 연구용역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용역의 필요성, 용역대상 과제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한 용역과제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 용역비계산 12억원 중 4억 원을 타분야 연구용역비 및 전용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 노력이 부족하고, 예산편성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 용역예산은 사업추진년도 1년 전에 편성되어 정확한 사업내용의 예측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2002년 용역예산에 12억 원을 총액으로 편성하였으나 용역시행과정에서 사업규모, 성격, 기간에 따라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계약이 추진되어 4억 원의 예산이 남게 된 것입니다.
- 따라서 동예산을 연도중 긴급히 예산소요가 발생한 국정관리정보시스템 DB구축 등 4개 사업 용역비와 공직기강 점검여비로 전용(내부)절차를 거쳐 집행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소요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4. 남극검열단 관련 지적사항

- 우리나라는 '89년 10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 지명된 이후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89년부터 매년 남극검열단을 파견하여 타국의 남극기지에 대해 검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남극조약 제7조(조사단 운영)  
남극에 진출한 국가가 남극조약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원을 파견하여 타국기지를 방문, 감시활동을 수행토록 규정
  - ※ 남극조약
    - '59년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제안으로 미국, 영국, 소련, 일본 등 12개국이 참가하여 조약을 체결하고 61년 6월 발효
    - 남극대륙의 국제법상의 지위를 정하고 남극의 이용원칙을 확립한 조약
    - ①남극의 평화적 이용 ②과학적 탐사의 자유 ③영유권의 동결, ④핵실험 금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
    - 우리나라는 '88년 2월 해양(연) 세종기지

- 건설이후 '89년 10월 협의당사국으로 지명
- 검열단 운영은 남극조약상 의무로서, 동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세종과학기지과 남극에서의 우리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가피합니다.
- '00년 12월과 '02년 1월 2회에 걸쳐 관계부처 과장급 공무원들로 남극실무단을 구성, 시험적으로 운영한 바 있으나
  - 실무단은 '02년 1월 이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정무위원회 결산 심사의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규제개혁위원회 「해외연구현황 파악」 등 실태조사 성격의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시행하면서도 전용을 통해 추가예산집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지난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남극기지검열단 참가 등 7건의 국외 출장(5,184백만 원)을 시행하였습니다.
- 지적된 「해외연구현황 파악」 등의 국외출장은 예산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출연(연) 체제개편 문제, 출연(연) 연합대학원 설립 등의 긴급현안 업무가 발생하게 되어 부득이 시행한 외국 실태 조사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연(연) 체제의 개편 필요성 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주도의 연구개발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연구기관 운영사례 고찰 필요
  - ※ 출연(연) 연합대학원 대학설립 추진이 본격화 되면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사례 분석 필요
- 향후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요불급한 국외출장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 기후변화협약대책추진 및 수질개선기획단 국외여비예산을 해당업무와 무관한 「중남미 진출기업 노무관리 실태조사 경비」 등으로 사용한 바 이는 목적의 사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에는 긴급히 추진해야 하는 각종 현안업무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예산편성에



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중남미 진출기업 노무관리 실태조사 등 긴급한 소규모 예산소요 발생시 시간적으로 별도의 예산확보가 곤란하여 기정예산을 활용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소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7. 규제개혁위원회 사례금예산을 과다계상하여 170백만 원 중 128백만 원을 별도의 전용절차없이 타분야에 집행한 것은 예산회계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2004년 예산 편성시 대폭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은 업무특성상 현안업무가 수시로 발생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예산편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는 2000년도부터 규제개혁과제 안건검토 및 현장조사요원 사례금 등으로 170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작년 국회 결산심사시 규제현장조사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2년도 규제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사례금예산이 남게된 것이며, 2003년에는 동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남은 예산을 국가이미지위원회 사례금 등으로 별도의 전용 절차 없이 집행하게 된 것은 통상 동일 세항·목간 예산은 내부결재절차만 거쳐 집행하고 있는 관례에 따른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소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과다계상 등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8. 연구기관 출연금의 과다이월 관련 지적

- 출연연구기관의 이월금은 주로 연구사업과 시설공사에서 발생하는데,
  - 과기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3년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 시설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부지 제공 조건 협의지연, 설계·공사 계약 과정에서의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연구사업을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하도록 하고 연구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기능을 내실화하여 연구사업비의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분원설치 등 시설사업의 경우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율이 낮은 기관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퇴직금충당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과정에서 수탁사업 수입 등 잉여금 발생시 퇴직금으로 우선 충당토록 하고 불필요한 자산처분 등을 통해 퇴직급여 충당금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지도·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어느 정도 퇴직금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자체수입확보가 어려운 기관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10. 경제·인문계 기관들이 수탁용역 수입비율을 낮게 계상하여 연구회의 예산심의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수탁용역 과제의 경우 과학기술계와는 달리 과제규모가 작고 연구기간이 짧은 단기성 수시과제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앞으로 연구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시 과거실적을 감안하는 등 수탁용역 수입규모가 축소되어 편성되지 않도록 지도·관리 해나가는 한편, 자체수입 초과분에 대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11. 차입금 상환예산의 과다한 이월 문제

-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과거 IBRD 등 국제개발기로부터 장기저리의 차관을 들여와 연구장비 구입 등 연구기반 구축에 사용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추가적인 차관도입은 없지만 과거 도입한 차관 원리금을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원화강제에 따른 환율변동 등

으로 이월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보다 정확한 환율예측 등을 통해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지도·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02년 차입금상환 예산 이월액은 '04년도 차입금상환 예산안 편성시 실소요를 감안하여 조정·반영하였으며 차입금상환 이월액은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12. 경제사회연구회의 경영협의회를 지방에서 개최함에 따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바, 향후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 회의실을 사용토록 하는 등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합니다.

- 경영협의회는 연구회 이사장, 이사 및 소관 연구기관 원장으로 구성되어 연구회의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출연연법 제25조).
  - 특히, 최근 경제사회연구회는 국가경제발전에 필요한 국가 전략과제(National Project) 발굴을 위해 기획평가위원회까지 참여하는 확대경영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부문별로 장시간 광범위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부득이 지방에서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02년 3회).
- 향후 연구회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개최 횟수를 줄이고, 산하 연구기관의 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3. 통일연구원이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 집행 잔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한 것은 예산 취지에 위배되며, 비정규직 인건비를 연구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항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출연금 연구사업비의 집행잔액은 본래의 목적대로 연구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연구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정규직의 인건비 및 퇴직관련 법정부담금은 연구사업비 이외의 기관 수입금으로 지급토록 하는 등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가 아닌 인건비로 편성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출연(연)의 인력 운영 및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4. 교육과정평가원(KICE) 중앙단위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사업비 과다 이월문제

- 동 사업은 양질의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용역사업으로 교육부 심의를 거쳐 경기도 교육청에서 '02년 11월에 의뢰한 사업입니다.
- 동사업은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한 단계적 지원(2002년도에 40%, 2003년도에 60%)과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배정된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나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초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 향후 연계되는 사업은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체제를 확립하여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KDI 공공투자관리사업 예산의 과다 이월액 발생의 원인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 2002년도 공공투자관리사업 예산 총 35억 원 중 15.6억 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 사업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기획예산처가 KDI에 의뢰, 예비타당성을 조사하는 사업)
- 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대부분 연말에 확정되어 의뢰되었기 때문입니다.
-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이 적시에 선정·의뢰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동 사업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 KDI의 지식교류협력사업 중 남북 지식협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한 사유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 지식교류협력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 ① 국제지식협력사업 : 체제전환국 또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전수
  - ② 남북지식협력사업 : 북한에 대한 시장경제 연수 등을 통한 북한경제발전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지원

- \* '02년 예산 1,175백만 원
  - 국제지식협력사업 949백만 원(81%)
  - 남북지식협력사업 226백만 원(19%)

- 남북지식협력사업이 부진한 사유는
  - 남북 지식교류의 직접적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하게 주로 일본,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남북간 지식교류로 추진되고 있고
  - 대북 사업의 특성상 기획에서 성사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 최근 북한 내부적으로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하면서(7.1개선조치) 남북직접 지식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보다는 원활한 직접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지식을 북한에 직접 전수하는데 초점을 두어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담당교원 연수사업 수행과정에서 원고료 지급 및 간접비 공제의 부적절 문제

-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교재의 원고내용이 다른 경우 원고료를 지급하였으나 세부내용 확인이 미흡하여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간접비 공제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연수를 운영한 1,2차에는 연수경비가 부족하여 간접비를 공제하지 않았으나 시·도 교육청 지원이 함께 이루어진 3차 연수 이후에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간접비를 공제하게 된 것입니다.
- 향후 연구회에서는 해당기관의 관련 경비가 세입세출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일관성있게 집행·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 한국교육개발원에 편성된 인문정책연구사업과 관련, 인문정책위원회 운영경비가 과다하고 과제수가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효율적인 연구가 어렵습니다.

- 2002년도 인문정책연구사업의 용역과제는 연구부문 12개, 교육 부문 12개, 사회적 활용부문 24개 등 총 48개 과제이며 총사업비 10억 원 중 651백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집행하고 223백만 원을 인문정책위원회 운영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 인문정책위원회 운영경비는 대부분 임시계약 직(5명) 인건비(116백만 원), 인쇄비(45백만

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인문정책위원회 실제 경비는 38백만 원 수준으로 많지 않습니다.

- 인문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수가 다소 많아졌으나 2003년 사업은 “한국 인문교육의 진단과 정책대안”을 주제로 7개 과제로 집중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과제수의 지나친 세분화를 지양하고 인문정책연구의 목적달성을 위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 공공기술연구회의 정책연구사업비의 협약 시기가 매년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공공기술연구회는 연 예산 46억3000만 원의 정책연구사업비를 기관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관 8개 연구기관에 배분하고 있으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연구기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관평가에 의한 차등, 사업계획의 접수 및 평가 등에 따른 시일 소요로 매년 협약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 정책연구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기관평가를 반영한 사업비 차등 배정, 개별과제의 연구 성과 평가 등은 불가피하나 기관평가가 종료되는 4월이후 과제기획 및 성과평가 등으로 인하여 매년 평가시기가 전년보다 조금씩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제기획 및 평가시기를 앞당길 예정입니다.

20. 해양연구원의 서해 임해연구기지 건설사업 관련 지적

- 과학기술처에서는 해양연구원 서해임해연구기지 건설을 위해 96년, 97년에 걸쳐 선감도(서해의 무인도)를 매입토록 한 바 있습니다.
  - ※ 당시 해양연구원의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처였음
- 그 이후 해양연구원의 서해임해기지 건설사업 추진이 보류됨에 따라 동 부지에 대한 매각을 결정('01년 3월)하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5차례에 걸쳐 유찰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해양연구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06년 3월 만료되는 어업권 면허가 연장되지 않도록 웅진군 등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정보자료 관 증축사업 관련 지적

- '00년 기관통합 문제로 이월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차년도 예산('01년, 29.5억)은 신청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지적 관련
  - 증축사업의 최초 예산요구는 '99년 5월말 이루어졌고, 양 기관의 통합은 2001년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어떠한 형태로 기관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족한 공간의 확보가 시급하였으므로 예산을 배정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건물인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국무조정실의 보다 면밀한 사전조율과 충분한 검토가 부족해서라는 지적에 대해
  - KISTI가 본원 인근의 ETRI 연구동을 인수하고 별도로 ETRI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간에 협의하였으나, 소요예산 확보문제와 연구공간이 부족한 ETRI에 대한 대체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아직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 앞으로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부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자료관 증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참여정부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을 감안할 때, 서울분원내의 증축추진결정이 실현가능하고 타당한 대안인지 의문이라는 지적 관련
  - KISTI는 본원을 대덕에 두고, 수도권지역의 수요자에게 산업기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에 분원을 두고 있습니다.
  - 서울분원의 기능을 유지·확충하기 위한 자료관 증축은 출연(연)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와는 다른 점이 있으나 자료관 증축이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 산업기술연구회 국외여비의 과다지출 관련, 향후 연구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유사목적의 해외출장을 억제하는 등 국외여비 운영을 개선할 필요

- 국제대기환경보전학술단체연합회(IUAPPA) 세미나 및 국제연합환경계획회의(UNEP)에 박원훈 이사장이 IUAPPA의 전임회장(1998~2001: 임기3년) 자격으로 기조연설 및 IUAPPA 국제

이사회회의에 한국대표로 참석한 바 있으며 연구회체제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 실정상 유사한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실제운영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 해외출장 계획 수립시 기존자료의 활용가능성, 출장 목적의 부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통신부품연구센터 사업비의 과다이월과 이월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동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바, 이에 대한 개선 대책

- 당초 광주시가 건설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키로 하였으나 관련 법규의 개정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착공이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중으로 '04년 하반기 준공예정에 따라 현재와 같은 과다이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연구회 이사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시 이자수입의 적절한 집행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구사업 관련 이자수입에 대하여는 가급적 해당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겠습니다.

24. 연구기관 이월금의 이자수입 처리 관련

- 2002년 결산상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이자수입은 328억 원으로 1기관당 평균 16억 원입니다.
- 이중 전자통신연구원의 이자수입이 125억 원으로 38.3%를 차지
  - 전자통신연구원은 쉐컴기술료 수입 등으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이자수입은 전액 연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전자통신연구원을 제외할 경우 1기관당 평균 이자수입은 10억 원 정도이며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시 자체수입에 이자수입을 반영시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이자수입이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지도·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融監督委員長 李晶載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금융감독원의 예산재원인 한국은행 출연금이 나 감독분담금, 발행 분담금이 사실상 준조세

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광의의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볼 때 국회의 결산심의나 국회의 요청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 대한 각종 의무제공을 위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없이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 하는 세금인 데 반하여 금융감독원의 예산재원조달 수단인 감독분담금 등은 감독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의 일환으로 감독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주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일종의 수수료로서 조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이외에도 조세는 그 부과주체가 정부예산을 지출하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 정부기관이며, 그 수입 전체가 국고에 귀속되는 데 반하여 감독분담금 등은 정부예산의 지원을 받지 않는 무자본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에서 실제 필요한 예산만 수입하고 잉여금을 전액납부기관에 반환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결산승인을 받기보다는 현행과 같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현행과 같이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감독원은 예산·결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독기구설치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금감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있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 특히, 예산심의를 위해 금감위운영규칙 제14조의2에 따라 상임 및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심의소위원회를 구성하여 2개월에 걸친 실질적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동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등 금융감독원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 상임위원, 재경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재경부·법무부·상공

회의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 또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는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로 현재 주요 선진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도 IMF 또는 IBRD의 권고\*에 따라 정부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원과 같은 무자본특수법인인 한국은행도 경비 예산만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고 있을 뿐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IMF 및 IBRD에서도 감독기능 강화 및 공정한 금융감독 업무수행을 위해 정부 및 국회로부터의 예산 및 운영상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권고

붙임 : 주요국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예산승인(결정) 현황

<붙임>

주요국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예산승인(결정) 현황

- 주요국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예산 결정방식은 조직의 형태·성격에 따라 상이하며, 예산재원 조달은 대부분 금융기관 분담금 또는 각종 수수료 등으로 충당
- 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권도 특수법인의 경우 기관 자체(위원회 또는 이사회), 정부 산하 독립기구의 경우 정부, 정부조직의 경우 국회가 보유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예산승인 및 재원조달 현황

국 별	예산 승인(결정)권자	예산재원 조달수단
영 국	- 기관 자체	- 금융기관 분담금
캐 나 다	- 기관 자체	- 금융기관 분담금
호 주	- 기관 자체 (다만, 재무부에서 금융기관 분담금 승인)	- 금융기관 분담금 (설립비용은 정부 부담)
한 국	- 금감위 승인	- 금융기관 분담금 -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 한국은행 출연금
노르웨이	- 재무부 승인	- 금융기관 분담금
일 본	- 의회 승인	- 정부 예산
덴 마 크	- 의회 승인	- 정부 예산 (금융기관은 정부에 분담금 납부)
스 웨 덴	- 의회 승인	- 정부 예산 (금융기관은 정부에 수수료 납부)

자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자문안이 금감위에 대한 단순 자문안인지 아니면 구속성을 띠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생명보험회사 상장자문위원회는 금년 6월 생보사 상장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자문기구로서 발족되었습니다.
  -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은 생보사 상장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상장에 대한 견해로서 정부에 제출되는 것입니다.

생보사 상장관련 99년 8월 12일 보험학회 및 금융연구원 공청회 결과, 2000년 7월 외국컨설팅기관(E&Y) 및 2000년 8월 세계은행의 용역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시며, 용역보고서를 위해 투입된 예산지출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보험학회와 금융연구원의 공청회 관련자료 : 별도 제출
- 언스트앤영(E&Y)용역보고서 관련
  - 2000년 5월에 과거계약자, 현재계약자, 주주 등 각 주체가 공정하고 적정한 몫을 배분받을 수 있는 생보사 성장방안을 마련하고자 외국전문기관인 언스트앤영(E&Y)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나
    - 언스트앤영과의 계약서 “Terms of Business” 제5조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조항에 의해 제출된 용역결과보고서를 제3자에게 배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은행 보고서 관련
  - 감독당국은 2000년 8월 생보사 상장과 관련하여 연금관련 컨설팅 업무차 방한한 세계은행 컨설턴트인 마크 파울러로부터 간략한 견해를 전달받은 바 있으나 세계은행에 공식적으로 생보사 상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바 없으며 세계은행도 이에 대해 용역을 권유 및 제공한 바 없습니다.
  - 한편, 파울러 보고서는 개인 컨설턴트의 조언으로 비밀유지(confidential)의 조건을 붙여 단순한 개인견해(6page report)를 제시한 것이므로 동 견해를 작성자의 동의 없이 밝히는 것은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마크 파울러에게 동 보고서의 공개여부를 문의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역보고서에 관한 예산지출 관련
  - 언스트앤영(E&Y)의 용역보고서
    - 금융감독원의 용역의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예산으로 용역료 US\$ 100,000(약 1억2천만원)을 지급
  - 파울러 보고서
    - 용역의뢰한 사실이 없으므로 용역료 지급 사실이 없음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기간이 13년간 연장되어 왔는데 현재 법인세 문제는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기간에 대한 문제는 세정당국(재경부)의 소관업무로서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시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이 거론되고 있는 생보사들로부터 상장신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있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 현재까지 정부의 상장방안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를 신청한 생명보험회사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삼성차 채권단의 요청에 의해 상장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보시고 이에 대한 경위 및 생보사상장과 삼성차 부채처리간의 관련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삼성차 채권단에서 상장관련 건의서를 제출(02.11.26)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성차 부채처리 문제는 삼성과 채권단간 합의에 따라 처리할 문제로서, 생명보험회사 상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금번 상장논의는 삼성생명·교보생명 등의 기업공개를 전제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면제기간이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에 의해 시작된 것입니다.

**(嚴虎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기관들이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

조(신용카드발급), 제47조(자금조달의 방법), 제50조(자기계열사 여신한도) 등에서 정한 영업규제사항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58조(과징금 처분)에 의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감독당국에서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위와 같은 법규를 위반한 16개 여전사에 대하여 1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나 여전사의 법규준수의식 개선, 감독당국의 사전지도 등에 따라 그 건수는 2000년 7건, 2001년 6건, 2002년 2건, 2003년중 1건 등 현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등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기관들이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관련 정보를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1999년 이후 코스닥 열기로 신규 협회등록법인이 급증하였고, 동 법인들의 공시에 대한 이해부족 및 관련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하여 공시위반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특히, 1999년 수시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 이후 공시위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였으나, 금년 들어서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1~7월
56건	113	134	221	98

- 이는 그간 공시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적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등으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의 공시에 대한 주의가 높아진 것과
- 공시 인식 제고를 위한 공시제도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공시안내 등의 결과로 사료됩니다.
- \* 공시제도 설명회 : 2003년 7월~9월 중 7회 실시

가장 많은 부분이 증권거래법중 주식공모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는데, 주식공모 관련 신고의무 위반사항이 가장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증권거래법에서는 50명 이상의 자에게 신규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청약을 권유할 때 공모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모금액이 20억원 미만으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당해 기업의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약권유대상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모집의 개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발행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등 전매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모집으로 간주하여 신고서 등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증권거래법에서 공시관련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코스닥 열풍을 타고 일부 비상장·비등록기업들이 소액 인터넷 공모 등을 실시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간주모집 관련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주식공모와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며 또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및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업공시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사를 강화함에 따라 주식공모 뿐만 아니라 여타 공시의무 위반 적발실적도 계속 증가하여 왔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들어서 경기침체로 주식공모가 감소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기업공시제도 해설책자 게시 및 공시제도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공시안내 등으로 유가증권발행과 관련된 발행회사 및 투자자의 의식수준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주식공모 등 공시관련 위반사항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연도별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먼저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 증권시장 공시의무위반 및 불공정 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강화 등으로 과징금 부과금액 자체가 크게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의

하나이며, 벤처기업 등 영세기업의 경우 과징금 부과시 경영진 도피·구속 등의 사유로 정상 기업으로 영업이 곤란하여 재력부족인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 과징금 부과금액 : 01년도 56억7,304만원 ⇒ 02년도 87억2,244만원

- 과징금 등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 향후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한 강제집행 등을 충실히 하여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2002년 금감위 세입예산중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관련 미수납액이 53억 5,2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유 및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22억 7,000만원에 대한 회수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업호성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참조

- 그리고 재력부족 등으로 인한 미수납액 22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 향후 과징금 부과업체에 대하여 재산조회 등을 통한 강제집행 등을 충실히 하여 미수납액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중 전용이 용이한 관서운영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 및 구조조정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입료에서 8,1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의 과다 계상때문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2002년도 금감위 세출예산중 관서운영비에서 1억 360만원을 전용한 이유는
  - 금감위 직제개정('02.2.1, 1실 2국 10과→1관 1실 2국 10과)에 따른 정원증가(61명→70명) 등으로 인건비 부족액 8,494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구조조정 중심의 업무에서 상시감독체제 구축 등으로 업무중심이 변화함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증대되어 여비로의 전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구조조정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입료에서 8,110만원의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 건당 변호사수입료 지급한도가 7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300~550만원 범

위에서 차등지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당초 예상했던 상소 건수가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상당부분 소송건수가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 향후 금감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李在昌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2002년도 과징금 관련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과징금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2002년도 세입예산중 과징금징수결정액이 세입예산액보다 대폭 증가한 이유는,
  - 2001년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과징금 한도액이 4억에서 20억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이 고액화되었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에 따라 2002년 하반기들어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 우리 위원회도 과징금 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2001년도를 시작으로 과징금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한 이후 과징금에 대한 산출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관서운영비의 과다계상으로 전용 및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 2002년도 금감위 세출예산중 관서운영비에서 1억 360만원을 전용한 이유는 이훈평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참조
- 또한, 관서운영비에서 2억 618만원의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 2002년도 세출예산중 물건비 10% 절감계획에 따라 관서운영비에서 6,5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 금융감독 관련 광고비(4,932만원) 및 구조조정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입료(8,110만원)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데 기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향후 금감위 세출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도한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2002년도 예산결산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세입부문>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유가증권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금감위의 발견·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해당 부과업체가 이미 재력 부족상태에 빠지게 되고, 유가증권신고의무제도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무지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 등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는 현실적으로 사후조사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과징금 부과조치의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것이 불가피하는 점을 말씀드리며

○ 경영진의 구속·도피, 협회등록 실패 등으로 부도에 이르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유지가 곤란하여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한편, 그 동안의 홍보노력에 힘입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사례는 줄어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금융제도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법규미숙지로 인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001년(울산, 광주)설명회 등 홍보강화 및 “기업공시제도”(2001년)책자 발행 및 수정발간 등으로, 2001년 78건 → 2002년 25건 → 2003년 4건으로 감소

□ 참고로 법령 개정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액의 상향 조정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강화 등에 따른 적발 건수 증가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늘어난 것도 미수납액 증가의 한 원인임을 말씀드립니다.

\* 과징금 부과금액 : 2001년도 567,304만 원 ⇒ 2002년도 872,244만 원

2002년도 금감위 세입예산중 과징금에 대한 세입예산편성 규모가 당해 연도 실제 부과건수 및 징수결정액 대비 과소계상되어 있으므로 향후 과징금 수입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

□ 2002년도 세입예산중 과징금징수결정액이 세

입예산액보다 증가한 이유는

○ 2001년 증권거래법 등의 개정으로 과징금 한도액이 4억에서 20억 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02년부터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액이 고액화되었으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조사강화 등에 따라 2002년도 하반기들어 과징금 부과액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 우리 위원회는 과징금 수입에 대하여 향후 체계적으로 세입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2001년도 12억 2,400만 원을 시작으로 과징금 수입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기 시작한 이후 과징금수입에 대한 산출방식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출부문>

매년 금감위의 관서운영비에서 전용 및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관서운영비의 과다 편성을 적정하게 통제하는 것이 필요

□ 2002년 세출예산의 관서운영비는 15억 7,440만 원으로서 이중 80.3% 해당하는 12억 6,462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60만 원을 인건비 및 여비로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2억 618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관서운영비에서 1억 360만 원을 인건비 및 여비로 전용한 이유는

○ 금융감독위원회 직제 개정('02.2.1, 1실 2국 10과 → 1관 1실 2국 10과)에 따른 정원증가(61명→70명) 등으로 인건비 부족액 8,494만 원을 전용한데 기인했고

○ 구조조정 중심의 업무에서 상시감독체제 구축 등으로 업무중심이 변화함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당국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증대되어 여비전용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관서운영비에서 2억 618만 원의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 2002년도 세출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물건비인 관서운영비(6,500만 원)를 절감하였으며

○ 금융감독 관련 광고비(4,932만 원) 및 구조조정 소송 관련 변호사 수입료(8,110만 원)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데 기인합니다.

연도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외화관련 경비로의 전용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국외출장으로 국외여비로의 전용이 발생한 경위

- 2002년 기관운영기본사업비중 여비 예산은 당초 1억 6,07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용액 1,865만 원이 추가된 예산현액 1억 7,935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 이처럼 여비 세출예산 대비 집행액이 증가(1,865만 원)한 이유는,
  - 직제 개정으로 인해 정원(61명→70명)이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구조조정 중심의 업무에서 상시감독체제 구축 등으로 업무중심이 변화함에 따라, 각국의 금융감독 당국간의 긴밀한 협조 필요성이 증대되어 여비증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원회가 2002년말 관서운영비에서 국외여비로의 전용에 대해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측가능한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불필요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의 수용비중 구조조정 소송관련 변호사수임료 1억 6,100만 원에 대하여 소송건수, 승소률, 집행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 2002년 금융구조조정 소송 관련 변호사수임료 1억 6,100만 원을 계상했으나, 이중 7,990만 원을 집행하고 8,11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먼저 변호사 수임료 1억 6,1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 금융·기업구조조정 과정상의 금감위 처분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는 소송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신속한 대응과 법리전개를 위임하여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02년 예산편성시 각 건당 지급한도를 700만 원(전년도 3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계상하였고
    - 소송의 특성상 상소제기를 예상하여 '01년 소송계속중인 사건 중 02년에 상소가 예상되는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계상한 데 기인합니다.

- 또한, 변호사수임료 중 8,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 건당 변호사수임료 지급한도가 7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300~550만 원 범위에서 차등지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고 적극적 소송대응으로 당초 예상했던 상소 건수가 승소로 종결됨에 따라 상당부분 소송건수가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 참고로 2004년도 예산에는 구조조정관련 소송 등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여 변호사수임료를 1억 3,3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금감위 세출예산에는 금융감독정책 등 관련 책자 발행 목적으로 각종 인쇄비를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실적은 저조한데 관서운영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 아닌지

- 2002년 금융감독정책 등 관련 책자 및 자료 발행 목적으로 계상된 각종 인쇄비 예산액은 2억 3,971만 원으로 이 가운데 9,705만 원을 집행하고 1억 4,266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 이처럼 관서운영비의 인쇄비에서 1억 4,266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 2002년도 세출예산 중 물건비 10%절감계획에 따라 관서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쇄비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였고
  - 2002년도 예산편성시 인쇄를 계획했던 금융감독정책 등 관련 책자 및 자료의 발행계획이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업무가 변화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된 것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정무위 예산·결산소위원회의 인쇄비 관련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집 및 편람책자의 경우 가제식으로 발간하여 예산을 절감 운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國務總理秘書室長 金大坤  
(李在昌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총리공관 대수선 공사와 관련하여  
-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전용의 원인

- 설계변경과 전용 원인
  - 2002년에 집행한 대수선 공사의 주요내역은

- 기계설비 교체공사(보일러·냉동기·공조기·펌프류 등)와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삼청당(연회장) 개보수공사, 경비실 개축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으로서
- 전기승압 및 가스배관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에는 공관 본관으로 인입되는 전기배선(전기승압 6,600V → 22,900V) 및 도시가스배관(경유 → 도시가스)에 대한 교체공사만 시행하려했으나,
    - 실제 굴착 공사시행과정에서 전기배선 및 도시가스배관은 물론 상수도관 등도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하였고, 관련 가스자동경보장치·모타·MCC판넬 등 각종 전기·통신관련 부대장치도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 삼청당(연회장)·경비대숙소·경비실·온실 등에 연결되는 전기배선·도시가스 및 상수도 배관시설 등도 심히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차제에 이들 작업을 동시에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절약과 공기단축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기의 전송수단으로서의 광케이블이 필연적인 것인 바, 기왕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광케이블 매설작업도 병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함께 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계획한 경비실내 방문자 화장실 개보수 공사의 경우도
    - 시공과정에서 경비실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되고 기존 화장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화장실 개보수 공사만 추진할 경우 방문자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경비실 건물전체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키로하고 관련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설계변경 이유외에도 공관 및 삼청당과 관련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국무총리 부재기간중에 실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가족의 공관거주 불편, 삼청당 행사곤란 등 공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공사를 계기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제 공사시행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02년 총리공관 삼청당 공사비가 예산보다 추가 집행된 내용 및 사유는

- 위원님께서서는 삼청당 공사비와 관련 '01년도 당초예산에는 15,674만 원이었으나, '02년도 집행결과는 34,270만 원이 집행되어 18,596만 원이 추가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그러나 추가집행액 18,596만 원은 본관 추가공사비 925만 원, 경비실 재건축비 9045만 원, 제 경비 5714만 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삼청당 개보수 공사비에 추가된 예산은 2912만 원입니다.
- 삼청당 공사비가 예산보다 추가집행된 내용 및 사유는
  - 목조건물의 수명을 고려하여 도장방법을 고급 천연유지로 사용하였으며, 난간철물장식을 황동으로 추가제작하고, 바닥·도장면적의 설계시 부족물량추가 등의 사유로 추가되었습니다.
- 한번의 개보수공사로 마무리하기 위해 추가공사가 불가피한 점과, 이러한 공사가 총리께서 공관에 거주하고 계셨다면 공사자체가 어려웠다는 점을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전계획을 치밀하게하여 예산의 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金文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정무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  
 - 방한외빈 접대비 과다계상  
 - 총리공관 대수선공사 전용

<방한외빈 접대비 과다계상>

- 총리의 방한외빈 접대행사비는 국정활동수행비중 업무추진비의 「일반업무비」 항목에 포함되어 각종회의 및 간담회, 선물구입비, 경·조화대와 함께 지출되고 있습니다.
- 향후 조치사항
  - 2004년도 예산부터는 실제 집행추세를 감안하여 동 예산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토록 하

했습니다.

<총리공관 대수선공사 전용>

□ 공사의 연도이월 사유

- 국무총리공관 대수선공사는 공관의 부대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 기계설비 대수선(전기공사 포함)의 경우 공사중에는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 본관 거주 및 삼청당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무총리 부재기간중(해외출장 등)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 따라서 2001년 7월 9일 계약체결후 공사시행이 가능한 시점에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으나, 국무총리 부재기간이 발생되지 않는 등 공사시행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2002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착공후 설계가 변경되어 예산을 전용하게된 이유

- 2002년에 집행한 대수선 공사의 주요내역은 기계설비 교체공사(보일러·냉동기·공조기·펌프류 등)와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삼청당(연회장) 개보수공사, 경비실 개축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으로서
- 전기승압 및 가스배관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에는 공관 본관으로 인입되는 전기배선(전기승압 6,600V → 22,900V) 및 도시가스배관(경유 → 도시가스)에 대한 교체공사만 시행하려했으나,
  - 실제 굴착 공사시행과정에서 전기배선 및 도시가스배관은 물론 상수도관 등도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하였고, 관련 가스자동경보장치·모타·MCC판넬 등 각종 전기·통신관련 부대장치도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 삼청당(연회장)·경비대숙소·경비실·온실 등에 연결되는 전기배선·도시가스 및 상수도 배관시설 등도 심히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차제에 이들 작업을 동시에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산절약과 공기단축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기의 전송수단으로서의 광케이블이 필연적일 것

인 바, 기왕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광케이블 매설작업도 병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함께 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계획한 경비실내 방문자 화장실 개보수 공사의 경우도
  - 시공과정에서 경비실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되고 기존 화장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화장실 개보수 공사만 추진할 경우 방문자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경비실 건물전체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키로하고 관련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설계변경 이유외에도 공관 및 삼청당과 관련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국무총리 부재기간중에 실시되어야 하는 계약이 있었으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가족의 공관거주 불편, 삼청당 행사곤란 등 공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공사를 계기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 전용재원 마련

-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에 충당코자 국무총리 부재중 또는 서리기간중 집행하지 못한 국정활동수행 업무추진비와 여비 및 관서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 향후 조치사항

- 향후 제 공사시행시에는 보다 면밀히 사전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嚴虎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2002년도 시민단체 해외연수(2회, 26명 참가) 참가단체 명단

<2002년 연수내역>

□ 제1차 연수

- 연수주제 : 지방자치와 주민운동
- 연수기간 : '02.9.14~9.21(7박8일)
- 연수국 : 영국, 프랑스
- 방문기관 : Birmingham City council, 파리 특별시청 등 10개 단체 방문
- 소요경비 : 28,848천원

○ 연수 참가자

번호	성명	성별	소속단체	직책
1	김연순	여	동북여성민우회	대표
2	김영애	여	연대회의	간사
3	이명애	여	관악주민연대	사무국장
4	이오이	여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국장
5	최진미	여	하남민주연대	상근운영위원
6	이상선	남	청양포럼	대표
7	금홍섭	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업국장
8	김명범	남	제주경실련	사무국장
9	김태근	남	울산참여연대	사무국장
10	안희만	남	나주사랑청년회	회장
11	이윤기	남	마산YMCA	부장
12	최홍재	남	열린사회 시민연합	사무국장
13	박동석	남	국무총리민정비서실	과장(3급)
14	김창훈	남	국무총리민정비서실	직원(6급)
15	김형호	남	국회	직원(6급)

○ 연수일정

일자	시간	연수내용
9/14 (토)		인천공항 출발 런던도착
9/15 (일)	전일	시내문화 탐방 : St.James's Park, 대영박물관, 버킹검 궁전, 트리팔가 광장, 타워 브릿지,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사원 관람
9/16 (월)	10:00 13:00 15:00	「Birmingham City council」 방문 「Solihull Motropolitan Borough Council」 방문 「Birmingham 대학 지방자치센터」 방문 및 토론 : 영국의 지방자치시스템과 주민참여현황
9/17 (화)	10:00 19:15 ~21:25	「타워헨릿」 방문 : 시당국자 프리젠테이션, 지역내 커뮤니티 방문] 파리로 이동
9/18 (수)		「파리 특별시청」 방문 「SOS RASICM」, 「CCFD」 등 파리지내 NGO 방문
9/19 (목)	10:00 15:00 17:00	「Commune-Ici-Les-Moulinxuaux」 방문 및 토론 : 마을단위의 지자체 운영과 시민참여 행정 토론 시민활동 탐방 및 문화센터 방문 프랑스 시민운동가와 대담
9/20 (금)	오전 16:05	파리 시내 문화탐방 파리출발
9/21 (토)	12:30	인천국제공항 도착

□ 제2차 연수

- 연수주제 : 평화와 연대
- 연수기간 : '02.9.28~10.5(7박8일)
- 연수국 : 일본
- 방문기관 :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코오베시의회 등 17개 단체 방문
- 소요경비 : 27,046천원
- 연수 참가자

번호	성명	성별	소속단체	직책
1	김옥성	여	소시모 성남지부	연구원
2	김재인	여	청주환경운동연합	간사
3	김진연	여	대전여민회	사무부국장
4	신영옥	여	울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
5	안병주	남	수원환경운동센터	활동가
6	윤영선	남	강진사랑 시민회의	사무국장
7	윤혜숙	여	가톨릭여성회관	실무자
8	이영일	남	홍사단	조직사업차장
9	이지현	여	한국JTS	사무국장
10	정경란	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
11	최성미	여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직국장
12	홍옥표	남	녹색연합	차장
13	이광희	남	원불교청년회	평화분과위원장
14	권상훈	남	연대회의	간사
15	신관철	남	국무총리공보비서실	과장(서기관)
16	원동문	남	국무총리총무비서실	직원(6급)
17	이화자	여	국회 정무위원회	직원(9급)

○ 연수일정

일자	시간	연수내용
9/28 (토)	10:00 12:10 15:30	인천출발 동경도착 「동경전쟁박물관」, 「평화유족회 방문」
9/29 (일)	09:00 ~ 18:00	일본평화운동 설명 「JVC(Japan Volunteer Center)」, 「Peaceboat」, 「PARC」 등 평화단체 및 시민단체 방문
9/30 (월)	10:00 14:00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NGO비전네트」
10/1 (화)	09:00~12:00 13:00 17:00 19:00	도쿄역에서 오사카로 이동(신간센) 「오사카 국제평화센터」 방문 「한남중앙병원」 방문 : 피폭자 간담 「한국의 원폭피해자를 구원하는 시민모임」 간담
10/2 (수)	08:30 10:00 15:00	코오베로 이동 「코오베시의회 시의원단과 간담회」 : 비핵 코오베방식과 지자체 평화활동에 관해서 「재단법인 코오베청년학생센터」 방문

10/3 (목)	08:00 13:00	히로시마로 이동 히로시마 운동 설명회 「히바쿠샤 관련자와의 간담회」 「평화기념자료관,공원」방문
10/4 (금)	08:00 ~17:00	「전쟁박물관」(에다섬 해상자위대 간부후보생학교 내), 「구레시 미군기지」, 「전쟁기념위령 탑공원」방문
10/5 (토)	09:30 11:05	히로시마 공항 출발 인천 도착

2. 참가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 2001년도

-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
  - 5개 이상의 개별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 신청
  - 당실에서 NGO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조인원 경희대 NGO대학원장 등 6명)를 구성, 심사
- 총 18개 컨소시엄(149개 단체)이 신청하였으며 연수프로그램의 독창성·연수효과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4개 연수단(32개 단체 참가)을 최종 선정

□ 2002년도

- 참가자 선발기준 설정 및 선정 절차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주관
  -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로서의 대표성 고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6월)하여 해외연수 프로그램 기획단(단장: 이정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위원: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 외 5명)을 구성하고,
  - 7월 23일~8월 3일 연대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민의신문 공지를 통해 참가자를 공모
    - \* 유럽 연수 : 모집대상 12명 중 39명 응모
    - 일본 연수 : 모집대상 12명 중 13명 응모
- 참가자 선정 절차
  - 우선 7개지역 시민단체연대회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하여
  - 수도권 대 비수도권 비율 (1:1), 남녀 비율 (1:1), 1단체 1인 참가 원칙, 이전 참가자 제외 원칙, 시민운동 활동 경력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결정

□ 2003년도

- 참가자 선발기준 설정 및 선정절차는 2002

년과 동일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
- 참가자 선정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연대회의측의 2003년도 중점과제인 ‘시민단체 활성화 정책’ 마련과 관련하여 일본 내 정책 조사를 목적으로 추진
  -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일본 NPO 법제 및 현황조사’를 위한 참가자 신청 공고
  - 연대회의 내 NGO 법제위원회 위원 및 관련 부문 실무자들과 여성·지역 등 부문별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6.18)에서 참가자를 최종 확정
- 특히 민관 협력을 추구하는 프로그램 취지에 따라 정부에서도 시민단체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참가

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참가단체를 추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로서 국내 시민사회에서 그 대표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는 최상위의 협의체이며
  -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 아래 시민사회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 연수과제 선정, 참가자 선발, 프로그램 진행 등 기본적인 사항을 시민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이에 당실에서는 연수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입안단계에서부터 긴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출발전 사전워크숍 개최 및 연수결과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연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4, 6. 왜 구성하지도 않은 국정자문단 간담회 예산을 2002년도 예산에 책정하고 집행하고자 했는지

- 정책자문위원회는 '99년 9월 구성되었으나, '00년 9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후 현재까지 재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 2002년도에는 국정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아 예

산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키 위해 2003년 예산에서는 국정자문단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5. 국무총리의 주요정책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 1999년 9월 8일~2000년 9월 7일까지 구성하여 운영한 「국무총리 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 2000년 9월, 자문위원들의 임기만료 이후 국정자문단을 재구성하지 않아 그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지

○ 정책자문위원회는 2000년 9월 이후 구성되지 않아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 2003년 예산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7. 당정간 정책협의 및 간담회의 경우 연간 48회 계획하였으나, 실제 2회만 개최하였고 부처별 당정협의까지 포함해도 계획에 절반도 못 미쳤는데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불용처리 한 것인지, 전용하여 사용하였는지

○ 당정간 정책협의 및 간담회의 예산은 당정협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3회), 당정협의회(19회), 정책설명회(9회) 등의 소요경비와
- 정당간부 해외연수, 법령안 제공, 회의개최에 따른 사전협의 등의 당정간 실무 협의에 소요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언론인 간담회 개최는 계획보다도 5배나 집행했는데, 계획보다 많이 개최함으로써 예산도 당초보다 초과하여 집행하였을 터인데,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가

○ 언론인 간담회가 많이 개최된 것은 사실이나,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전용한 것은 아닙니다.

○ 언론인 간담회는 실 간부 및 실무자들의 수시 활동에 따른 것으로, 국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도 긴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총리공관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 보수공사가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유  
 - 실제 착공후 설계변경된 이유

- 업무추진비 전용으로 인해 총리의 활동에 지장은 없는지
- 집행잔액으로 공사규모를 확대한 것은 예산의 편성목적을 무시한 처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사의 연도이월 사유

- 국무총리공관 대수선공사는 공관의 부대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기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 기계설비 대수선(전기공사 포함)의 경우 공사중에는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수가 없어 본관 거주 및 삼청당 사용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국무총리 부재기간중(해외출장 등)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 착공후 설계변경된 이유

- 2002년에 집행한 대수선 공사의 주요내역은 기계설비 교체공사(보일러·냉동기·공조기·펌프류 등)와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삼청당(연회장) 개보수공사, 경비실 개축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으로서
- 전기승압 및 가스배관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에는 공관 본관으로 인입되는 전기배선(전기승압 6.600V → 22,900V) 및 도시가스배관(경유 → 도시가스)에 대한 교체공사만 시행하려했으나,
  - 실제 굴착 공사시행과정에서 전기배선 및 도시가스배관은 물론 상수도관 등도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하였고, 관련 가스자동경보장치·모타·MCC판넬 등 각종 전기·통신관련 부대장치도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 삼청당(연회장)·경비대숙소·경비실·온실 등에 연결되는 전기배선·도시가스 및 상수도 배관시설 등도 심히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차체에 이들 작업을 동시에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절약과 공기단축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기의 전송수단으로서의 광케이블이 필연적일 것인 바, 기왕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광케이블 매설작업도 병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함께 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계획한 경비실내 방문자 화장실 개보수 공사의 경우도
  - 시공과정에서 경비실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되고 기존 화장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화장실 개보수 공사만 추진할 경우 방문자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경비실 건물전체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키로하고 관련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설계변경 이유외에도 공관 및 삼청당과 관련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국무총리 부재기간중에 실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가족의 공관거주 불편, 삼청당 행사곤란 등 공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공사를 계기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 업무추진비 전용에 따른 국정활동수행의 지장 여부
  - 설계변경으로 인해 늘어난 사업비에 충당코자 국무총리 부재중 또는 서리기간중 집행하지 못한 국정활동수행 업무추진비와 여비 및 관서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였습니다.
- 예산목적외 집행에 대한 의견
  - 예산은 당초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앞으로 제 공사시행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편의주의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 '02년도 국무총리 공관 개보수도중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를 확대하고 예산을 전용집행한 것은 자의적 예산운용이라 생각되는데 국무총리비서실장의 견해는

- 착공후 설계변경된 이유
  - 2002년에 집행한 대수선 공사의 주요내역은 기계설비 교체공사(보일러·냉동기·공조기·펌프류 등)와 전기시설 개보수공사, 삼청당

- (연회장) 개보수공사, 경비실 개축공사, 아스콘 포장공사 등으로서
- 전기승압 및 가스배관공사 등과 관련해서는 당초 설계서 작성시에는 공관 본관으로 인입되는 전기배선(전기승압 6,600V → 22,900V) 및 도시가스배관(경유 → 도시가스)에 대한 교체공사만 시행하려했으나,
  - 실제 굴착 공사시행과정에서 전기배선 및 도시가스배관은 물론 상수도관 등도 심하게 노후화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체가 필요하였고, 관련 가스자동경보장치·모타·MCC판넬 등 각종 전기·통신관련 부대장치도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 삼청당(연회장)·경비대숙소·경비실·온실 등에 연결되는 전기배선·도시가스 및 상수도 배관시설 등도 심히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하였으며, 차제에 이들 작업을 동시에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예산절약과 공기단축 등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였습니다.
-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정보통신기기의 전송수단으로서의 광케이블이 필연적일 것인 바, 기왕에 굴착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광케이블 매설작업도 병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함께 하였습니다.
- 또한, 당초 계획한 경비실내 방문자 화장실 개보수 공사의 경우도
  - 시공과정에서 경비실건물이 지나치게 노후화되고 기존 화장실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화장실 개보수 공사만 추진할 경우 방문자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경비실 건물전체에 대한 개축공사를 추진키로하고 관련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상기와 같은 설계변경 이유외에도 공관 및 삼청당과 관련부대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는 국무총리 부재기간중에 실시되어야 하는 제약이 있었으며,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국무총리를 비롯한 가족의 공관거주 불편, 삼청당 행사곤란 등 공관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왕에 시작된 공사를 계기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기간 단축 및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 예산목적외 집행에 대한 의견

- 예산은 당초 편성한대로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앞으로 제 공사시행시에는 보다 면밀한 사전검토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産業技術研究會理事長 朴元勳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의 이월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

- 출연(연)의 이월액 발생은 연구비와 시설비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구비의 경우는 연구수행기간이 주로 3~5년으로 장기적이고, 연구가 균등적으로 진척되지 않는다는 특성으로 1년 단위 회계연도기준으로 볼 때 이월액의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시설비의 경우도 당초 수립된 계획에 의거 예산이 충분하게 지원되지 않거나 지자체의 부지제공 조건의 갑작스런 변경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 이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소관기관 사업계획 승인시 이월금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정부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시중은행 이자율하락 및 출연금예산의 분할배정 등으로 정부출연금 이월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규모는 미미하여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기관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시 적정규모의 이자수입을 계획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퀄컴기술료 127억을 포함한 총 250억 7,200만 원 기술료 중 약 95억원을 공용자체사업이나 연구장려금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므로, 구체적인 기준에 입각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기술료 250억원 중 퀄컴기술료(63억원)를 포함 148억원을 반납(103억원) 및 유보(45억원)하여 102억원이 연구소 가용수입액입니다.
- 가용재원 중 약 47억원은 연구장려금으로 지급

하였고 나머지 55억원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및 내부연구관리규정에도 가용재원의 50%는 연구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잔여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재투자 등으로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연구관리규정 제16조 3항)

퀄컴 CDMA 로열티 지급과 같이 우리 기업들의 로열티 지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자체수입이나 이자수입을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ETRI는 CDMA개발 등의 경험으로 원천기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 상기와 같이 연구장려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술료 수입은 연구개발에 재투자하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확충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및 잡수입은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원천기술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基礎技術研究會理事長 鄭明世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 차년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하여 먼저 개별 기관 차원에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등을 파악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 개별 기관에서 요구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내용에 대하여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 산하 연구회에서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정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확정하고, 이와 병행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사업 대한 사전조정을 받아 사업계획의 타당성, 면밀성 등을 평가받아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편성함.
- 이러한 사업은 편성된 예산 범위내에서 12월에 다음연도 세무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다시 연구회에서 기획평가위원회와 경영협의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조정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확정하여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가피한 이월금 발생 사유
  -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편성상의 검토가 불충분하기보다는 예산편성 절차 및 사업의 성격, 예산집행의 회계처리방법등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발생합니다.

성과급 지급을 위해 의도적인 사업비의 이월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액 발생
  - 당초 사업계획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수립 하였어도 국내외 환경변화 및 물가변동 등으로 사업 추진 상에서 일부 지연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연구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차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본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월액 발생은 대부분 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나 연도별 예산은 그 해에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처에서 연도별로 많이 혹은 적게 편성하고 있어, 기관에서 추진하는 연도별 시설사업 건설공정과 예산이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총사업비와 건설규모는 변화가 없으므로 이월예산과 당해 연도 예산을 본사업에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 이자수입 발생과 사용
  - 현재 이자율이 하락하여 이자수입은 미미한 수준으로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다년도에 걸쳐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비용 발생에 지출 사용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에서 초과비용이 발생하고, 이러한 비용들은 이자수입으로도 충당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公共技術研究會理事長 朴炳權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 성과급 재원 확보를 위해 의도적인 사업비 이월 발생

- 출연연구기관의 이월금은 주로 연구사업과 시설공사에서 발생
  - 과학기술계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3년 이상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 시설공사의 경우 지자체의 부지 제공 조건 협의지연, 설계·공사계약 과정에서의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이사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비의 이월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사업 종료시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지도·관리를 통하여 정부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 출연금 운영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사업계획 수립시 수입예산으로 적정규모가 산정되도록 할 것이며, 출연(연) 결산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도입하여 불가피한 이월예산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적절한 집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國民苦衷處理委員長 李沅衡  
(李在昌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전문위원의 건축·도시분야, 재정·세무, 형사·법무 분야 관련 전문가의 충원 및 관련 전문가의 현업 종사자에 대한 문호 개방
2. 전문위원의 자격중 ‘고층위 경력자’의 활용이 위원회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 될 수 있고 또한 다른 관점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임

- 우리 위원회는 9명의 전문위원이 행정자치·인사·재정·세무 등 28개 분야의 업무를 검토하고 있는 관계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모두 충원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민원접수현황에서 보듯이 6개 분야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올해 8월 도시분야 담당 전문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여 도시분야 전공자로 도시·건축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였습니다.
- 또한 올해 공개모집시에 건축사, 변호사 등 관련 현업 전문가를 충원하고자 하였으나, 그에 걸맞는 연봉을 협상할 수 있음에도 변호사의 경우에는 한명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건축사의 경우 1명이 응시하였으나 채용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선발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결원 발생시에는 주요분야에서 유능한 현업 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위원회 출신 공무원의 자리보전용이란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위원회 출신 공무원들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전문위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유자격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공정한 방법으로 충원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 전문위원의 당초 예산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로 인한 9504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이렇게 지급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 2002년도 우리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주심위원을 보좌하는 전임“나”급 계약직 9명이 있으며,
  - 동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2년도 2월 관계부처(행정자치부)와 계약직공무원 승인협의 과정에서 전문위원 연봉액이 예산상의 단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며,
- 또한, 전문위원 1명이 연도 중에 사전예고 없이 퇴직하여 결원 보충을 위한 공백과 신규 채용자의 낮은 연봉(초임연봉) 지급 등으로 9천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앞으로는 임용협의과정에서 연봉계약액을 상향조정하거나
  - 인건비 예산의 적정액 편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광고료 예산 3억 6528만 원 중 2억 275만 원 만 광고료 예산으로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였는 바, 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미약한 시점에서 광고료가 축소 집행된 사유는?

- 2002년도 우리위원회의 홍보예산은 신문(1억 95백만원), 라디오(33백만원), 지하철(1억 37백만원) 등 광고료 3억 65백만원과 각종 홍보책자 인쇄비(33백만원), 연합통신단말기 이용료(36백만원) 등을 합하여 총 4억 2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그 중 지하철 광고비가 전액 절감되었는데, 이는 국정홍보처에서 인권위, 부방위 설립 시 우리 위원회와 함께 3개 기관의 지하철 광고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중복광고를 피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 또한 신문광고비에서도 계약 단가를 다소 삭감하여 여유 재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렇게 발생한 재원을 서울역 앞 전광판광고, 인터넷 배너광고, 홍보책자 유인물 확대, 위원회 홈페이지 개편작업, 위원회창립 8주년기념 세미나 등에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 물론, 절감된 재원은 전액 불용 처리함이 국회의결에 충실한 면도 있으나,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 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소규모예산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는 전광판 및 인터넷 배너광고, 각종 홍보용 인쇄물 확대배포 등 다른 분야의 홍보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 앞으로 예산편성시 치밀한 검토와 예측기법을 다양화하여 예산내역대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 홈페이지 개선사업 예산이 기관운영사업비에 2190만 원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광고료 예산 중에서 2636만 원을 지출하였는 바, 홈페이지 개선사업의 편성과 집행이 불일치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 2002년도 기본사업비에 편성되어 있는 우리 위원회의 홈페이지 개선작업 예산은
  - 연간 2190만 원으로 월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유지보수 예산이며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2636만 원이 소요된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 홈페이지 전면 개편작업은 민원인의 전자민원 접수·처리와 각종 자료열람의 편의성 제고는 물론,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의 안내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것입니다.
- 물론, 동 예산항목을 홍보비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홈페이지개편작업 또한 홍보의 일종으로 판단되어 지하철광고비 절감 분을 활용한 것입니다.
-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확보하여 예산편성 내역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홈페이지를 자주 찾고 위원회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결과 국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하다고 지적하신 바, 이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충민원을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비율이 50%이상으로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민들의 참여도가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디자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신 바, 디자인 개선을 비롯하여 행정정보 공개 확대 등 좀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홈페이지를 전면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홈페이지의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전문계약직 인건비가 2년 동안 과다 편성되고 있는 바, 적정한 예산 편성을 위하여 전년도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2년도 우리 위원회의 전문계약직은 주심위원을 보좌하는 전임“나”급 계약직 9명이 있으며, 동 예산은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하여 책정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2년도 2월 관계부처(행정자치부)와 계약직공무원 승인협의 과정에서 전문계약직 연봉액이 예산상의 단가보다 다소 낮게 책정되었으며,

○ 또한, 전문계약직 1명이 연도 중에 사전예고 없이 퇴직하여 결원 보충을 위한 공백과 신규 채용자의 낮은 연봉(초임연봉) 지급 등으로 9천만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 앞으로는 임용협의과정에서 연봉계약액을 상향 조정하거나

- 인건비 예산의 적정액 편성을 위한 관계기

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非常企劃委員長 尹光雄**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을지연습과학화 사업의 자산취득비를 인건비로 전용한 이유는?

○ 을지연습과학화 사업의 목적과 인건비로 전용한 이유 및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전용문제의 반복성 여부?

□ 을지연습 과학화사업의 목적은

○ 현대전과 정보화시대에 맞는 국가전쟁수행 체계 확립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과학화된 전쟁지원을 위하여 실전과 같은 상황묘사로 실질적인 을지연습 실시에 두고 '9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을지연습정보화」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자산취득비를 전용하게된 이유는

○ 불가피한 명예퇴직사유가 연초에 발생하여 (2급 1명, 4급 1명)자산취득비를 인건비로 부득이하게 전용조치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구입하기로 한 보안장비는 시스템개발 용역비에 포함해서 계약·구입하여 을지연습시 사용함으로써 2002년 을지연습간 정보시스템의 운용상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연도별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

○ 2000년도에는 직급보조비 3백만원 부족에 따른 전용, 2001년도에는 별도정원 4명 발생에 따른 6천4백만원 전용 등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 이런 사유가 발생한 이유는 차년도 예산편성시 예측하기 어려운 별도정원과 명예퇴직수당지급소요 등으로 인한 것이며,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는 아니며 참고로 2003년도에는 명예퇴직수당이 1억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향후에는 인건비 소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靑少年保護委員長 李承姬**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 및 음란폭력 매체물 추방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발달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 피해가 날로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음란·폭력물 유통현황(국내 심의현황)

연 도	2000	2001	2002	2003.4월현재
심의건수	7,881	11,084	20,287	13,306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이버상의 불건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역기능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개정, 민·관 합동 협력체계 구축, 사이버윤리 교육 강화, 업계 자율적 정화운동 추진 등 다각적인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03년도의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03년도 주요 추진내용
- 인터넷사이트 청소년보호담당자 운영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개정 추진(현재 법제처 심사중)
  - 웹사이트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유해사이트 감시 및 정화활동 전개(전문모니터 2명, 어머니모니터요원 320명 구성)
  - 건전한 사이버윤리 확립을 위한 미디어 교육 실시
  - 업계의 자율적인 정화 촉구
  - 음란물 및 불법 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 보급
  - 요보호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보호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9월)

○ 다만, 인터넷의 익명성, 빠른 전파성을 이용하고 불법음란정보의 대부분이 국내법을 피해 해외서버를 이용하여 개설·운영되는 현실 등을 감안하여 인터넷 피해에 대한 청소년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한글음란사이트는 2003년 5월 현재 약280여개로 추정

<둘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사업의 경우 현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서면만으로 파악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감시단의 체계적인 지원이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현지 실태조사 여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행위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과 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실태조사와 관련 실제적으로 감시단 위탁교육 지원여비를 제외한 실태조사를 위해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은 320만원 정도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별 감시단 위탁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감시단 운영사항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으며,
- 감시단 활성화를 위해 학교감시단 등에 YP 프로그램이 보급·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앞으로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예산항목에 따라 적정한 예산집행과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에 응모한 시민단체의 간부를 심사위원에서 배제함으로써 나눠먹기식 사업자선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조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심사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사업심의에 있어서 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지역사회분과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 분야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추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심의

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심사위원 선정시 응모한 시민단체의 간부는 배제하는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 사업 심의시 심사기준으로는 10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철저히 평가하고 있으며,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는 부분을 가급적 지양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기준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 사업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청소년 긴급전화 홍보 사업비의 비효율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 사업의 경우 전용 등의 조치 없이 편성된 사업과 무관한 사업경비로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제약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 사업의 예산편성내용이 주로 제도 시행관련 공청회 예산이었으나,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위락지구와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이었기에 법률에 위락지구 지정을 명시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 “위락지구”가 반영되었습니다.(2002.12.30)

○ 동 제도의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 추진주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진권한이 있는 부처의 주관으로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 예산에는 동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동시에 2002년도에는 월드컵 등 국가적 대형 행사에 편승하여 범국민적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보호주간행사(10.21~27)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진행되었던 관계로 동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며,

○ 향후에는 가급적 신규사업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타 사업비에서 운용하게 될 사유가 있으면 그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전 전용조치 등 적절한 예산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년 긴급전화 홍보탑의 경우 설치비용과 보수비용에 비해 홍보효과의 실효성이 적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홍보탑을 보고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전화를 이용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홍보탑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가출, 폭력, 성 등에 대한 고민상담 전화임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청소년보호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확산하자는 데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홍보탑은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비용이 다소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특정의 장소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일반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중집합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주변에 설치한 것입니다.

○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홍보탑 2조는 하루에 경부고속도로(기흥)는 상하행선을 합하여 하루 평균 16만대, 중부고속도로(만남의 광장)는 12만대가 이용하고 있어, 설치와 보수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홍보탑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도색 등의 보수가 필요 없는 알루미늄으로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설치예산 대비 홍보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나 도서관 또는 각 학교에 포스터를 게시하는 것이 비용과 효과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하시면서 그 부분의 비용 집행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긴급전화 1388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02년에는 포스터를 제작(217,000매)하여 전국 초, 중, 고 학교 게시관과 PC방 등에 부착,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

며, 동시에 홍보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홍보탑보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광고가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 부분의 예산집행을 늘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이나 방송광고는 기타 다른 매체 보다 홍보효과에 있어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료홍보가 가능한 청소년대상 방송프로그램 등에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한편 인터넷이나 방송광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田濬源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보호 단축마라톤 행사를 국회의 예산 승인 없이 무리하게 행사를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한 처사이고, 관련성이 미미한 6개 타 예산과목에서의 예산집행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보호사업은 사회적 관심과 전 국민의 동참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먼저 청소년보호 단축마라톤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세계 2위를 나타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1년도를 “청소년 흡연예방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청소년 흡연 예방사업추진과 아울러 청소년 보호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과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사회적 관심제고를 위해서 범국민적 홍보 및 캠페인 효과가 큰 마라톤 대회를 부득이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 그 동안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 금연을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뛰는 금연마라톤”(올림픽공원, 5,000명 참석)을 개최한데 이어, 2002년도에는 가족을 주제로 “가족과 함께 하는 청소년보호 단축마라톤”(월드컵공원, 6,000명 목표, 7,300여명 참석)을 개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청소년 넷사랑의 일환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단축마라톤”을 한강시민공원에서 추진할 예정(10.19)이며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그 동안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청소

년들이 교사는 물론 부모 형제 등 가족들과 한데 어울어져 달리기를 함으로써 좀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등 청소년 보호문제에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심신을 다지는 등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 향후에는 신규사업수요를 충분히 예상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경우 그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전 국회에 보고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보조금 사업 및 청소년긴급전화 홍보탑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실태와 보조금을 지급받는 감시단의 보조금 집행실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2년에 걸쳐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의 운영실태와 적정 관리를 위해서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실제로 감시단 위탁교육 지원여비를 제외한 실태조사를 위해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은 320만원 정도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별 감시단 위탁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동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 고자 하였으며,
  - 감시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감시단 등에 YP프로그램이 보급·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감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 사업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의 취지는 민간단체의 감시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을 강화하는

것인데 감시단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행사성 사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중 행사성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활동이 보편 타당한 사업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며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노출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청소년유해환경 척결을 위해 효과적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정화 활동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지원하였으나, 향후에는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에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얻기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에 소속된 위원을 배제하고 사업심의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응모한 시민단체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의 선정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 발생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심사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자체적으로는 사업심의회에 있어서 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지역 사회분과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여 동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전문가를 추천받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 분야 관련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선정하게 되었으나, 추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 심의 시에는 반드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청소년긴급전화 홍보탑의 경우 어떤 이유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세워져야 하는지 이유와, 긴급전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광고수단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홍보탑은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 청소년 가출, 폭력, 성 등에 대한 고민상담 전화임을 홍보하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의 청소년보호의식을 함양하고 이를 확산하자는 데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 그리고 홍보탑은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비용이 다소 저렴하고 수명이 길며 특정의 장소에 오랫동안 설치되어 일반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중집합장소인 고속도로 휴게소와 역, 버스터미널, 백화점주변에 설치한 것입니다.

- 특히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된 홍보탑 2조는 하루에 경부고속도로(기흥)는 상하행선을 합하여 하루 평균 16만대, 중부고속도로(만남의 광장)는 12만대가 이용하고 있어, 설치와 보수에 들어간 비용 이상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홍보탑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도색 등의 보수가 필요 없는 알루미늄으로 설치하여 비용을 절감토록 하고, 설치예산 대비 홍보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다른 홍보수단에 관해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청소년긴급전화 1388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2002년에는 포스터를 제작(217,000매)하여 전국 초, 중, 고 학교 게시판과 PC방 등에 부착, 전국적인 홍보를 실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며, 무료홍보가 가능한 청소년대상 방송프로그램 이나 인터넷 방송광고 등에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李在昌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및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 사업의 재정적 지원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청소년보호주간 기념식 행사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것은 당초 계획 했던 소기의 성과 일부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1회 청소년보호주간 행사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 등 청소년보호활동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추진·기획된 사업으로서 청소년보호주간 행사를 통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정화활동 등 사업에 범국민적인 관심제고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자율적 참여를 높여 나가고자 일



- 부 홍보성 경비가 부득이하게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님의 지적을 검허히 수렴하고 앞으로는 예산항목에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둘째> 감시단의 운영실태와 감시단의 보조금 집행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지 실태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국내여비 예산을 편성하고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지원사업 중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감시활동을 위하여 현장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공감합니다.
  - 실제로 감시단 위탁교육 지원여비를 제외한 실태조사를 위해 순수하게 편성된 예산은 320만원 정도로 종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지역별 감시단 위탁교육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동 사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하였으며,
    - 감시단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감시단 등에 YP프로그램이 보급·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앞으로는 현장감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 사업의 경우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제약하는 것이며 계획된 사업의 성공을 방해하는 결과라고 지적하시며 예산편성내역과 달리 집행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성인업소위락지구 집중화 사업의 예산편성내용이 주로 제도 시행관련 공청회 예산이었으나,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위락지구와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이었기에 법률에 위락지구 지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역점을 두었으며, 그 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 시행령에 “위락지구”가 반영되었습니다.(2002.12.30)
  - 동 제도의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 추진주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적인 추진권한이 있는 부처의 주관으로 정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2003년 예산에는 동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동시에 2002년도에 월드컵 등 국가적 대형 행사에 편승하여 범국민적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청소년보호주간행사(10.21~27)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진행되었던 관계로 동 예산에서 집행하게 되었으며,
  - 향후에는 가급적 신규사업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타 사업비에서 운용하게 될 사유가 있으면 그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전 전용조치 등 적절한 예산집행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 <넷째> 성인업소 위락지구 집중화 사업은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시계획법 및 조례 등의 보완이 필수적이어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도 도입 및 사업추진주체로서 적격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동 제도의 도입의사를 발표할 당시 우리위원회에서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의미도 크다는 점에서 추진기로 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 현재 사회여건상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점, 또한 추진주체로서의 적격성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우리위원회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2003년부터는 동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동 제도는 언젠가는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동 제도의 성공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물론 기존

도시에 있는 성인업소의 일괄적인 집중화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신도시 또는 새로운 도시계획 수립시에는 청소년보호차원에서 성인업소의 정비방안도 포함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를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연구결과 등을 건설교통부,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의원 등에게 통보하면서 동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도입시행 등을 요청하였고(2002. 1), 그 결과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정안에 위락지구 지정근거를 마련(2002.12)하였습니다.
  - 또 이를 근거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 등에 신도시건설 등 향후 도시계획 수립시 위락지구 지정의 적극적인 시행을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